



# 제 1 편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I. 목적 및 사업개요
- II.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III.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IV.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 V. 기타 사업관리



# I 목적 및 사업개요

## 1. 목적 및 지원 현황

### 가. 목 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나. 지원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	예산 (국고기준/ 백만원)	22,641	21,992	26,302	28,533	35,275	39,054	39,124	37,511	43,216	39,013
	대상 질환	4종	6종	8종	11종	71종	89종	111종	111종	111종	132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예산 (국고기준/ 백만원)	32,481	31,470	31,470	28,043	28,274	33,786	37,273	29,416	32,006	
	대상 질환	133 <sup>1)</sup> 종	134종	134종	134종	134종	134종	133 <sup>2)</sup> 종	133종	951개 <sup>3)</sup>	

1)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분류 기준이 변경됨

2) 결핵 산정특례 변경('16.7.1 시행)으로 대상질환 축소

3) 희귀질환 지정(18.9.13 공고)에 따라 분류기준이 중에서 개로 변경됨

## 2. 사업개요

### 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희귀질환자 및 그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를 의미함

####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진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붙임 1)”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다)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라)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94개에 한함)

#### 2)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5개에 한함)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3)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7개질환에 한함)

- 가)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 의료비

### 1) 건강보험가입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sup>4)</sup>)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부전 요양비”라 함)
- ② 간병비(월 30만원)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 환자가구에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여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sup>5)</sup>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가)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나)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5) 본 특례조항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정기 재조사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재조사하도록 함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951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sup>6)</sup>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1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94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5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붙임 3) 참조

6)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다. 지원 제외 대상

- 1)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

## 라. 사업 수행 체계

### 1) 등록 신청

“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4쪽 참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소득·재산조사 실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 4)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 마. 기관별 담당업무

### 1) 보건복지부

- 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②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 ③ 희귀질환 관련 법인 및 단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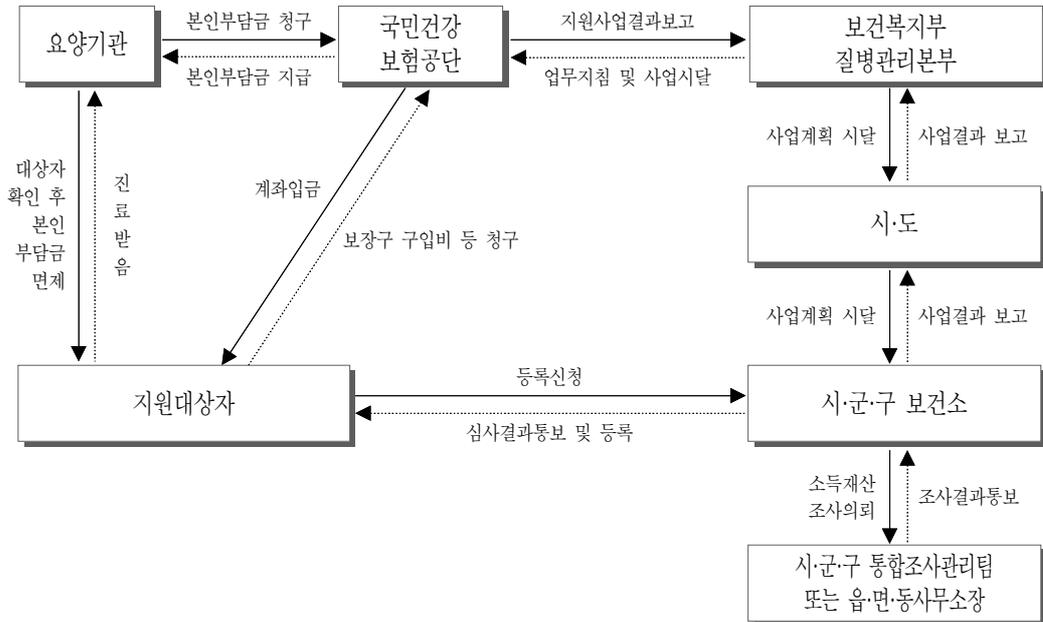
### 2) 질병관리본부

---

7)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 의뢰함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담당자 교육
  - ② 희귀질환자 헬프라인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③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결산 관리 및 실적 관리
  -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⑤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대상 질환 선정 등 기타 지원사업
-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 ② 시·군·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 ③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4) 시·군·구 보건소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관리 실시
  - ③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 상황 점검·조정
- 5)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
- ① 재산조사 의뢰 시 조사결과 통보
- 6) 국민건강보험공단
- ① 예탁금 관리·집행·예산집행 실적관리
  - ② 희귀질환자 자격정보연계, 구축 및 요양기관 제공
  - ③ 의료비, 간병비 등 지급 및 환수내역 제공
  - ④ 서면청구 의료비 등 확인 및 심사지급
  - ⑤ 의료비지원내역 질병관리본부에 제공
-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① 진료내역 심사 및 평가
- 8) 요양기관
- ① 수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여부 및 등록증 확인 후 요양급여 비용 면제 처리
  - ② 지원대상자에게 공제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9)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①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 및 정보제공

< 사업수행체계도 >



## II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1. 일반원칙

#### 가.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sup>8)</sup> 확인만으로 선정함

#### 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8)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중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1)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함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3)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2.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 나. 신청 방법

#### 1)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3)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5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4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5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 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에서 지원가능

※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목록은 (붙임 3) 참조

4)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가) 신청서식

- ①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③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④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⑤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 ⑥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sup>9)</sup>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sup>10)</sup>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같음
-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sup>11)</sup>

- ①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단,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
  - 소득·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
- ④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파킨슨병 ((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9)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여야 함

10)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11)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li> <li>•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증 사본 1부</li> <li>•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li> <li>• <u>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u></li> </ul>
혈우병 입원특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중 별지 제7호서식 대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u>사본 1부</u></li> </ul>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li> </ul>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li> <li>• 특례자 외 환자의 <u>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u>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li> </ul>

☞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li> <li>•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li> <li>•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li> <li>• <u>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u></li> </ul>
간병비를 지원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급 확인(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li> </ul>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li> </ul>

5) 신청의 효과

- 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나) ‘지원신청일’ 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다. 건강보험가입자 산정특례 등록 확인방법

- 1) 보건소(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산정특례 확인 요청
  - 문서형태로 공단지사에 확인 요청하되 문서 송수신 방법은 수시로 전자 결재를 활용(오류 발생 시 팩스 사용가능, E-mail 활용 금지)
  - 개인별 연번을 부여하여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산정특례 종류 표시하여 요청  
 ※ 산정특례 종류는 (붙임 1) 확인
-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지방자치단체)로 회신
  - 보건소로 제공하는 희귀질환자의 등록정보는 성명과 상병코드, 상병명, 적용시작일, 만료일에 한함(요청문서와 동일하게 반드시 개인별 연번 부여하되 아래 서식 활용). 전자 결재로 회신

### <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식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정특례 종류
1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질환(05)* <input type="checkbox"/> 극희귀질환(11) <input type="checkbox"/> 기타염색체이상질환(14) <input type="checkbox"/> 희귀질환(21) <input type="checkbox"/> 중증난치질환(23)
2			
3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산정특례 등록자는 희귀난치질환(05)으로 구분

### < 공단에서 회신하는 서식 >

연번	성명	상병코드	상병명	적용시작일*	만료일*
1	홍길동	G35	다발경화증	2012.1.1	2016.12.31
2					
3					

\* 재등록된 대상자는 적용시작일 및 만료일을 재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회신

### 3.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 가. 환자가구

##### 1)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희귀질환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sup>12)</sup>은 제외)으로서, 생계<sup>13)</sup>나 주거<sup>14)</sup>를 같이 하는 사람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임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판단 기준

-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건소장이 판단하면 환자가구에서 분리
- 환자가구 가구원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sup>15)</sup> 그의 부양의무자<sup>16)</sup>가 되는 경우
  -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환자가구에 포함

1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환자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13)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14) 주거를 같이하는 자(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15)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16) 신청자(환자)의 부모(결혼하여 출가한 여성인 경우 시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서 환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

## 2) 환자가구에서 제외하는 사람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사람
  -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 ② 민법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환자가구에 포함)

나)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환자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환자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환자가구의 재산에 포함

-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 단,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sup>17)</sup>은 환자가구에 포함
- ②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지원 중지함
  -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여권사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sup>18)</sup>·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사실조사 보고서 첨부)한 사람
- ⑦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

17) 상근예비역: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18)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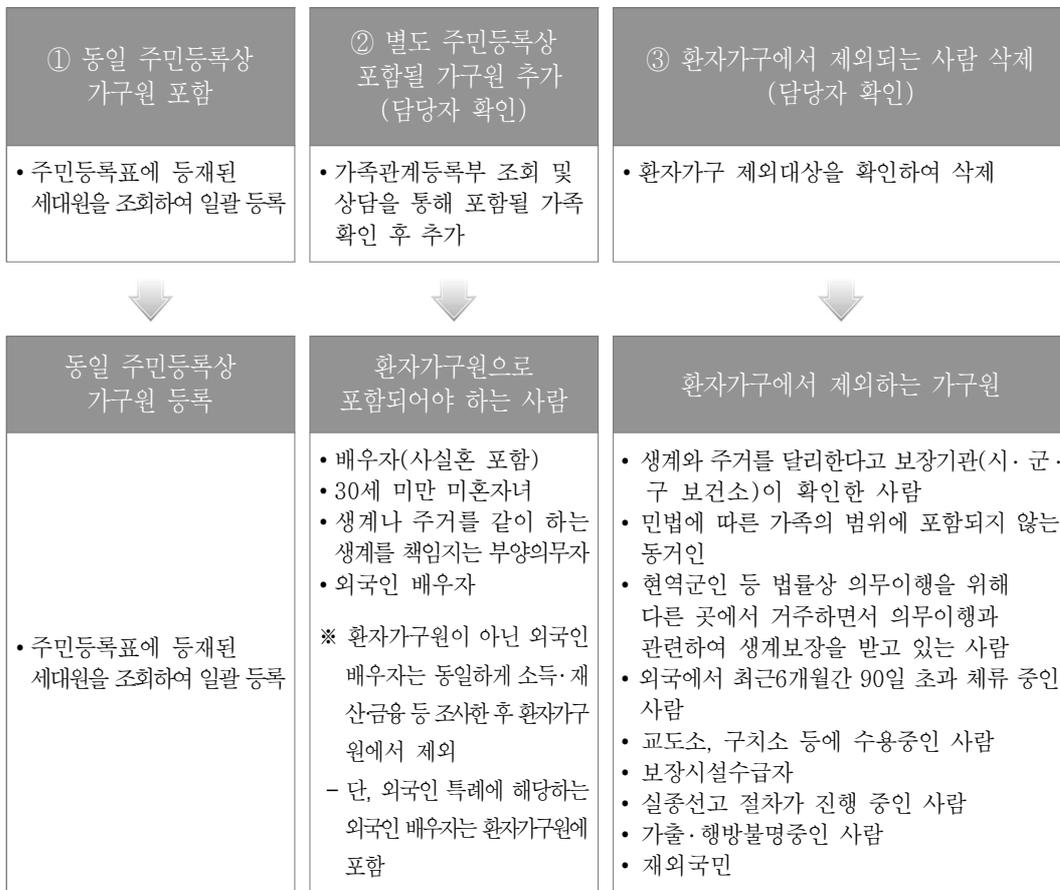
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는 지원신청 가능.

3)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세대원)을 조회하여 환자가구에 포함
- 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환자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 다)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가구구성 처리 절차>



4)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인정 : 가구전체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로 분리·신청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

- <동 특례 운영 기본 원칙>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환자가구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인 경우 하나의 가구로 산정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분리하여 각각 가구로 산정
  - 하단의 (가)~(자)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집에서”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부과

- 가) 신청자(환자)가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
  - 임신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나) 신청자(환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재산 때문에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인 경우
- 다) 신청자(환자)가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인 경우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 라)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의 신청자(환자)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인정하는 경우
- 마) 신청자(환자)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인 경우. 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바) 신청자(환자)가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동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 사) 신청자(환자)가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로서,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은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은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아) 신청자(환자)가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인 경우
- 자)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환자)가 부모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자(환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 나. 부양의무자가구

### 1) 부양의무자의 범위

- 가)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나)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등)

### 2)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나)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다)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 2촌 이내의 혈족<sup>19)</sup>

19) “나. 부양의무자가구(22~24쪽)”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범위 외에는 “가. 환자가구(18~20쪽 참조)” 기준 적용

### 3) 소득재산조사 대상자의 범위

#### 가)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신청자(환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예 ① 신청자의 부모와 신청자의 형제가 한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형제는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신청자의 친부모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 ② 신청자의 부모와 부모의 형제가 한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의 형제는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신청자의 친부모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 ③ 신청자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 신청자의 손자녀가 한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신청자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 ④ 자녀가 환자이고, 자녀의 친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별도가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 자녀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의 2촌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신청자의 친부모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 ⑤ 신청자의 자녀와 신청자의 사돈이 한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사돈은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⑥ 신청자가 이혼 후 신청자의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신청자의 자녀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 ※ 단, 자녀가 결혼하여 가구를 이루었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은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나) 신청자(환자)가 위 “4)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가구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

#### 4)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가) 신청자(환자)의 딸이 출가한 경우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단, 이혼하였을 경우 부양의무자에 포함)

나) 여성 신청자(환자)가 출가한 경우 친정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단, 시부모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며,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친정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됨)

- 다) 결혼한 남성 신청자의 경우 장인, 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라) 환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마) 환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환자의 계자녀)
- 바) 환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계부, 계모 등은 환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사)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의 가구(상호간에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님)
  -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아)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 ※ 환자가구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환자의 환자가구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환자의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외국인이므로 환자가구로 포함하지 않음)

※ “나. 부양의무자가구(22~24쪽)”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범위 외에는 “가. 환자가구(18~20쪽 참조)” 기준 적용

## 4.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 가. 일반원칙

#### 1) ‘소득평가액’ 을 ‘소득’ 으로 간주함(세전금액)

- ①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②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안내 제2편(85~86쪽)에서 확인하여 반영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안내 제2편(87~88쪽)에서 확인하여 반영

- 2) 재산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잔액이 남은 경우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3)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 4) 재산기준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의한 소아·아동암 환자 재산기준 미만
  -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산정
- 5)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은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보다 높게 설정함
- 6) 치료를 위해서 고가의 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고혈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 및 혈우병(D66~D68.2) 환자는 다른 질병보다 소득·재산기준을 높게 설정
- 7) 기타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례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나. 소득·재산 적용 기준

- 소득기준: 2019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미만
- 재산기준: 2019년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의한 소아·아동암 환자 재산기준 미만
  -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 다. 자동차 기준

### 1)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은 재산가액에 포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 차량가액을 재산산정 시 제외

#### ① 생업<sup>20)</sup>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환자가구 차량의 자동차 용도를 제공받아 반영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하고, 이외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

※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소유 차량 1대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sup>21)</sup>

20) 생업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예시)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21) 장애인 사용 자동차란

(자동차의 범위)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이 또는 상이자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라. 특례적용자(소득·재산조사 면제 또는 적용기준 상향 조정)

### 1) 소득·재산조사 면제

가) 혈우병환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sup>22)</sup>, 혈우병환자 중 HIV감염자<sup>23)</sup>, 혈우병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sup>24)</sup>(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환자 중 HIV감염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 입원특례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함.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보건소 통합관리시스템에 혈우병입원특례를 작성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등록증 번호는 발급 하지 않음

### ☞ 혈우병, 혈우병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 혈우병 입원특례

	일반혈우병(D66~68.2)	혈우병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혈우병 입원특례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규신청 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와 동일	신규신청자(환자)와 동일 (단, 소득재산조사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혈우병 입원특례자 등록 신청서로 신청
소득재산 조사여부	소득재산조사 실시함	소득재산조사 면제	소득재산조사 면제
기준	소득재산조사 기준 상향 조정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제출 (3개월 이내)	해당 영수증으로 공단에 서면청구
지원 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단, 혈우병 및 관련 합병증 치료에 한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단, 혈우병 및 관련 합병증 치료에 한함	요양급여 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한 경우 한시적 지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건수 제한 없음

22)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를 사용하다가 동 제제에 대한 항체(억제인자, inhibitor)가 생성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용량의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 ‘프로트롬빈 복합체 농축제제(prothrombin complex concentrates)’ 또는 ‘유전자 재조합 제7응고인자’의 다량 사용에 따른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한 특례 인정임

23) HIV/AIDS 혈우병 관련 진료비 지원에 국한함

24) 혈우병 환자는 손상에 따른 출혈 또는 수술 과정의 출혈 등이 발생할 때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를 다량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한 특례 인정임(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면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인 경우(환자가구 특성 고려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시 가능)
- ② 환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이고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③ 환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 아동

\* (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만 30세 생일 도래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④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 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②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사람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① 신청자(환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장이 확인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환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신청자(환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신청자(환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신청자(환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아동·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신청자(환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신청자(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②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신청자(환자)가 소명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자(환자)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환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 ③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지원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 신청자(환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경우

-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② 부양의무자인 신청자(환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

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나 재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거나,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처분이 곤란하여 해당 재산을 제외하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④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아래의 신청자(환자)
  - 신청자(환자) 가구원이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만성질환,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자(환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자(환자)가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 가구로, 부양의무자 등(전배우자, (조)부모, 자녀의 친생부모)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 등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서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손자녀의 부모를 제외하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신청자(환자) 가구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⑤ 신청자(환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⑥ 부양의무자가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부채(의료·교육·주거부채에 한함)를 상환하고 있어 소득에서 상환금액(원금+이자)을 제외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⑦ 부양의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체불액을 제외하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 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의를 통해 체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6개월에 1회이상 체불여부 확인

- ⑧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상태는 아니나 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신청자(환자)가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경우
- ⑨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 2) 소득·재산기준 상향 조정

- 환자가구에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2인의 경우 150%, 3인의 경우 300% 상향 조정)

※ 환자가구에 한하여 상향 적용 부양의무자가구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단,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여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sup>25)</sup>

---

25) 본 특례조항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정기 재조사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재조사하도록 함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120%)	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혈우병 고쇄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731,213	4,650,445	6,016,051	7,381,658	8,747,264	10,112,870	11,478,47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200%)	3,414,016	5,813,056	7,520,064	9,227,072	10,934,080	12,641,088	14,348,096
혈우병 고쇄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096,819	6,975,667	9,024,077	11,072,486	13,120,896	15,169,306	17,217,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136,122,532	170,641,094	195,202,360	219,763,626	244,324,892	268,886,158	293,447,424
	중소도시	151,122,532	185,641,094	210,202,360	234,763,626	259,324,892	283,886,158	308,447,424
	대 도시	211,122,532	245,641,094	270,202,360	294,763,626	319,324,892	343,886,158	368,447,424
혈우병 고쇄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453,741,775	568,803,645	650,674,532	732,545,420	814,416,307	896,287,194	978,158,082
	중소도시	503,741,775	618,803,645	700,674,532	782,545,420	864,416,307	946,287,194	1,028,158,082
	대 도시	703,741,775	818,803,645	900,674,532	982,545,420	1,064,416,307	1,146,287,194	1,228,158,082

혈우병 · 고쇄병 · 패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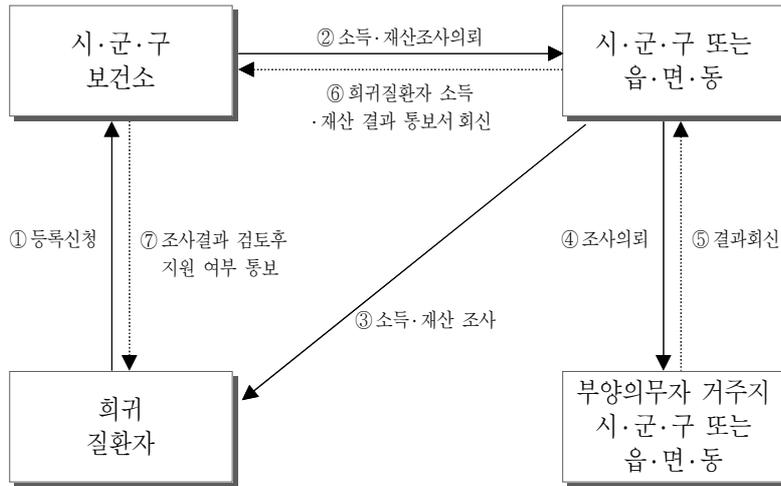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226,870,887	284,401,823	325,337,266	366,272,710	407,208,153	448,143,597	489,079,041
	중소도시	251,870,887	309,401,823	350,337,266	391,272,710	432,208,153	473,143,597	514,079,041
	대 도시	351,870,887	409,401,823	450,337,266	491,272,710	532,208,153	573,143,597	614,079,041
혈우병 고쇄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544,490,129	682,564,374	780,809,439	879,054,504	977,299,568	1,075,544,633	1,173,789,698
	중소도시	604,490,129	742,564,374	840,809,439	939,054,504	1,037,299,568	1,135,544,633	1,233,789,698
	대 도시	844,490,129	982,564,374	1,080,809,439	1,179,054,504	1,277,299,568	1,375,544,633	1,473,789,698

혈우병 · 고쇄병 · 패프리 ·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5.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sup>26)</sup>(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 가. 조사절차



- 1)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
- 2) 시·군·구 보건소는 환자가거와 부양의무자가거에 대해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회귀질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과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조사를 의뢰
- 3)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가거와 부양의무자가거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 ※ 부양의무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음
- 4)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가거와 부양의무자가거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 ※ 통보 시 다음 서식에 의함
  - 별지 제10호서식(회귀질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26)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소득 및 재산조사가 면제된 특례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5) 시·군·구 보건소는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로부터 회보 받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환자)에게 통보

※ 금융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함

## 나. 금융재산조사

- 1) 조사대상자: 조사 당해연도 정기 재조사 대상자 및 신규 등록자
- 2) 조사시기
  - 신규등록자 : 신규 등록 시 실시
  - 정기 재산조사 대상자(기존 지원대상자) : 정기재조사시기에 실시(매년 2회 상·하반기)
- 3) 조사 절차
  -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 상세 기준은 제2편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안내(114~118쪽)에 설명된 사항 확인 후 조사에 반영
  - 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소에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 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4) 조사 후 조치
  - 가) 신규등록자
    - 소득·재산결과와 금융재산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의료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나) 정기 재산조사 대상자(기존 지원대상자)
    - 정기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금융재산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등록증 만료일까지 지원 후 퇴록 조치

## 6.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 가.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1)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환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환자)의 질환 상태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
- 2)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sup>27)</sup>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그 사유를 통보)
- 3)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함**
  -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4) 의료비지원 신청자의 이의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소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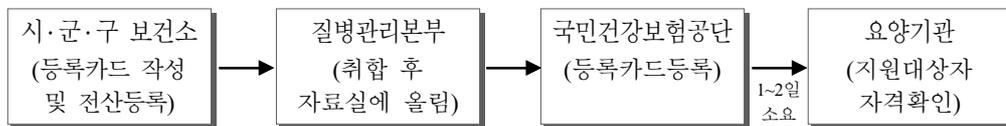
**나. 지원대상자 통보**

- 1) 지원대상자 통보
  - 지원대상자 통보 시 반드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적합·부적합] 통지서(별지서식 20호)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붙임 7)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함
    - ※ 대상자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조회로 가능하므로 '16 부터 별도의 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음

**다.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

- 1) 보건소 담당자는 별지 제11서식(희귀질환자 등록카드)의 내용을 **희귀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송은 다음날 오전 8:00~9:00로 하므로 통합관리시스템상에 등록카드를 작성한 다음날 오후(공휴일 제외) 부터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가능함
- ※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정보 제공 절차



27) 특별한 사유에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신청자(환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이 해당됨

### III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1.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가. 정기 재조사

#####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예) 2017년도 1월~6월 등록자는 2019년(상반기 4월~5월)에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2019년 6월 말까지 보장 후 지급 종료하며 7월~12월 등록자는 2019년(하반기 10월~11월)에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2019년 12월 말까지 보장 후 지급 종료

- 조사 시기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 ☞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침(신청주의)

신청서식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①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① 주민등록등본
②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
③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 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 으로 제출)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
④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④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 시스템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⑤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⑥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14~16 신규 신청자(환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참조

2) 특례적용자의 정기재조사

- 조사 대상

- ①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환자가구로 상향조정하여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선 정기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인만 지원 받는 경우
- ②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조사 및 보장 시기: 위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매 2년마다 실시

- 특례적용대상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통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간병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 등급 확인(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이상)

※ 특례적용자 정기재조사의 경우에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등록카드에 소득재산내역은 반드시 “0”원으로 입력

3) 외국인 특례 대상자의 정기재조사

- 조사대상 :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p.11)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타 정기재조사 대상자와 동일

- 추가 확인사항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11)

## 나. 수시 재조사

- 1)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탈락 조치)
- 2) 사망자 정보
  - 범정부 사이트(www.wish.go.kr)에서 수시로 확인 후 자격관리
  - 범정부 사이트(www.wish.go.kr) 내 사망의심자HUB에서 사망의심자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자격관리

## 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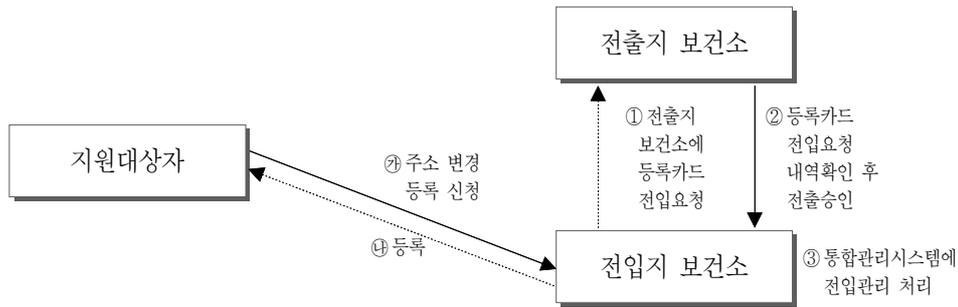
- 1)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중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증 만료일자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격이 정지됨
-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카드관리(조회)에서 산정특례 등록기간 만료 대상자 검색 후 산정특례 재등록여부 반드시 입력
  - ※ 산정특례 재등록 여부 확인방법은 17쪽 참조

## 라. 재등록에 대한 세부사항

- 1)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 2) 정기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퇴록사유발생일(정기재조사 당해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 ※ 단, 환자의 전·출입 등으로 재산변동이 크거나 만성신부전증(N18)으로 장기이식수술 후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가 된 경우 등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재신청이 가능함

※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 또는 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기준에 해당되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침(신청주의)

## 마. 지원대상자 주소 변경 시 조치



### 1)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등록(㉗)  
 ※ 전입신고 기준일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고 할 것

### 2) 전입지 보건소

- 전입일자를 기재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출지 보건소에 등록카드 전입요청 (공유요청)함(①)
-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입관리 메뉴를 통해 전입승인 처리를 해야 함<sup>28)</sup>(③)
- 주소 변경 등록 신청을 한 지원대상자를 등록(㉘)
- 전입된 지원대상자 등록 시 전입지 주소를 반드시 수정해야 함(도로명 주소로 수정)  
 ※ 전입일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

### 3) 전출지 보건소

- 전입지 보건소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 들어온 등록카드 전출요청 내역을 확인 후 승인 처리 함(②)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전출지 등록카드는 자동 전출처리 됨<sup>29)</sup>

### 4) 의료비 등 지급

- 본인부담금: 진료개시일이 속한 날의 시·군·구(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
- 간병비: 간병비 지급당시 소속된 시·군·구(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
-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청구 시점의 진료개시일이 속한 시·군·구(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

28) 전입관리를 통하지 않고 환자등록카드작성 기능을 통해 작성 시 전입지와 전출지간 전출·전입 일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29) 기존의 통합관리시스템상 별도의 퇴록 처리 없이 승인 후 자동 전출처리 됨

- 특수식이 구입비 : 청구시점의 진료개시일이 속한 시·군·구(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

5) 전입과 전출에 따른 보건소의 서류 관리

- 환자의 전입 및 전출 시 전출기관에서 환자에 관한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전입기관에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바. 의료보장 자격의 변동 시 지원범위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 되는 경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가능)

가)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기존 지원대상자: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건소장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를 재징구하여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조사를 의뢰

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규 신청자 :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건소장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를 재징구하여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조사를 의뢰

2)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동 되는 경우

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기존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전날을 퇴락사유발생일로 지정하여 퇴락 처리

나)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기존 지원대상자 :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자격 유지

※ 다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격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전날로 자격해지 처리

사. 의료보장 자격의 변동 확인방법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변동 확인

가) 질병관리본부는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을 송부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나) 자료가 업로드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보건소로 업로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

다)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업로드 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된 전날로 퇴록처리**

라) 정해진 기한 내로 퇴록처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퇴록처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가) 질병관리본부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현황을 송부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나) 자료가 업로드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보건소로 업로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

다)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업로드 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차상위로 전환된 전날로 퇴록처리**

라) 정해진 기한 내로 퇴록처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퇴록처리

## 2. 지원대상자의 퇴록

### 가. 퇴록 기준

1) 소득·재산의 변동

- 정기 재조사의 경우: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최초로 도달하는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소득·재산의 관련사항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 퇴록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변동이 있는 날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 수시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퇴록 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

2) 장기이식 관련

- 만성신부전증(N18)은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한 날로 퇴록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sup>30)</sup> (단, 이식 후에도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가 될 경우 퇴록한 날로 6개월 이내 재등록 가능함)

-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성신부전증(N18)을 제외한 질환은 장기이식 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함(단, 만성신부전증(N18)은 이식수술한 날까지 발생한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하되, 장기이식한 날로 지원자격을 퇴록함)

30) 만성신부전증(N18)의 경우 투석(혈액, 복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면 투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식받은 날로 퇴록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함

**< 장기이식 관련 확인과정 >**

1. 질병관리본부는 월별로 장기기증지원과에서 N18(만성신부전증) 수급자 중 신장이식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송부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2. 자료가 업로드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보건소로 업로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
3.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업로드 된 신장이식자 현황을 확인한 후 이식한 날로 퇴록처리 (단, 이식 후에도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이고 신장 장애 2급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퇴록처리 하지 않고 기존자격을 그대로 유지)
4. 정해진 기한 내로 퇴록처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퇴록처리

3) 의료보장 자격 변동 및 지원대상자의 사망

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동 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이 불가하므로 전환된 전날 퇴록사유발생일 지정하여 퇴록 처리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하여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자격을 유지

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날로 퇴록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

- 사망내역은 보건소 담당자가 범정부 사이트([www.wish.go.kr](http://www.wis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범정부 사이트([www.wish.go.kr](http://www.wish.go.kr)) 내 사망의심자HUB에서 사망의심자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자격관리

나. 퇴록 방법

- 1) 퇴록 사유, 사유발생일 등 관련 내용을 희귀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퇴록 조치**(퇴록사유 발생일이 지급만료일이 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함)
- 2) 퇴록 조치 지연으로 인해 지원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주의

# IV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 1. 의료비 등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가. 지급 대상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951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sup>31)</sup>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91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94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95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목록은 (붙임 3) 확인

3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나. 지급 기간

- 1) 지급개시일의 기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신청일**<sup>32)</sup>
- 2) 지급 종료일의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의료보장 자격의 변동, 소득·재산의 변동, 질환명 등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퇴록일**

## 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 가. 지급대상

- 1)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2)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 나. 지급범위

- 1)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 단,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만성 신장병(상병코드: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

32) 지원신청일은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 신청한 당일로 등록결정이 되면 지원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 이와 관련하여 등록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의 기한을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제한함

## 다. 지급절차

### 1)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 ○ 지원 대상자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H” 등록자

“H” 등록된 경우 **951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모두 지원가능**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정한 951개 대상질환자

#### ○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 환자의 신분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c.or.kr>)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자격 확인

☞ 자격조회 시 “H”등록여부 확인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2007.11.23)

- 시행일 : '08.4.1진료분

- 명세서 구분자 신설 : 공상 등 구분 “H”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포함) 진료 분리청구를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 “I”

- 희귀질환자 “지원대상 진료분”인 경우

구분	산정방법
본인일부부담금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
지원금	지원대상 의료비기재(=본인일부부담금)

☞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만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공상등 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H	100,000	10,000	10,000	90,000

#### ○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지원대상 진료

☞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DRG 진료분의 경우는 동시에 이루어진 타상병 진료도 별도 명세서 구분 없이 일괄 청구

- 제외대상 진료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급여대상),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제외

○ **동시 이루어진 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상해외인 구분자: “I” 기재(공상 등 구분자 H는 미기재)

☞ 명세서 청구구분 코드 “3(분리청구)” 기재

☞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타상병 진료해당 내역만 기재(중복기간은 미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내원일자: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타질환 진료 중에 희귀질환 진료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되, 희귀질환 명세서에는 H(공상구분) 및 I(상해외인) 함께 기재(중증질환청구서와 동일한 방식)

○ **장기이식 대상자(신장이식)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만성신부전(N18)대상자가 신장이식한 날로 퇴록 조치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H로 자격확인이 되어도 신장이식한날까지 H로 청구 그 이후는 일반적으로 구분 산정하여 청구하고 일반청구건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가 부담토록 함

○ **코드누락 및 착오 청구를 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코드 누락 및 착오 청구를 한 경우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의 신청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 **지급 불능사유(48번 코드)로 지급이 안된 경우**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지급 불능사유(48번 코드)로 지급이 안된 경우 자격 여부 확인 후 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청구 양식을 참고하여 공단에 재청구하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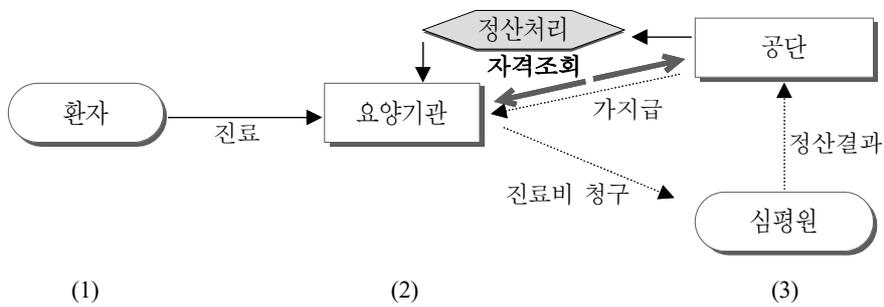
- 진료비 가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 전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요양기관의 공단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sup>33)</sup> 지급)

- 사후 정산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가지급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사례조사 통해 사후 정산처리

< 본인부담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3. 한시적 지원 대상질환

가. 지급대상

1) 대상질환

- (붙임 2) 한시적 지원 대상질환 참조

2) 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에 한하며(‘18.12.31 이전 신청자) ’19.12.31까지 한시적 지원 후 지원 종료

※ 단,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이동시 계속 지원 가능

33)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 4.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사 서면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서면청구 요건 및 절차

#### 1) 서면청구 요건

- ①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②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본인부담금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④ 혈우병 입원특례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혈우병입원 특례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 서면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 2)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 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
- 청구가능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 ① 별지 제11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시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 3)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 지원대상 진료

- 회귀질환으로 인한 치료로 입원시 동일 진료과목, 외래 시 같은 날 동일의사의 진료분(영수증 접수 시 외래산정특례적용여부로 확인)에 한해 지급. 단, 입원 및 외래 시 합병증으로 인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
  - ※ 명세서상 주상병이나 부상병이 회귀질환 상병이어야 함
  - ※ 다만, 만성신장병(상병코드:N18) 환자의 외래진료 시 주상병이 해당상병이어야 하며, 부상병이 해당상병인 경우에는 소견서 필요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회귀질환의 진료와 회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산정특례 지원상병 및 산정특례 미적용건의 경우도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제외

## 나. 지급절차

### 1) 지원대상자 확인

- 공단 각 지사에서 서면접수 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 2) 지급 요건 확인

- ① 회귀질환 또는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여부 확인
- ②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출혈이 발생한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청구 시 입원기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액 등을 확인
- ③ 의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의 원본 여부 확인
-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⑤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⑥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⑦ 전액본인부담금(100/100)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⑧ 선별급여 항목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⑨ 예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⑩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본인부담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범위, 사업안내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기준 시점을 준수하여 심사 및 지급의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일괄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영수증 서면 접수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지
  - ※ 서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전 가지급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소요됨

## 5. 만성신부전 요양비

### 가. 지급대상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부전증(N18) 환자

### 나. 지급범위

-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다. 지급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

-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복막관류업체
- 청구서식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① 별지 제12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본인부담금 청구서)
    - ②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복막관류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 ① 별지 제12호의2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본인부담금 청구서 [업체용])
- ② 별지 제12호의3서식(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 ③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 2)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신부전 요양비(지급종별에 요양급여비로 등록됨)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만성신부전 복막관류액(자동복막소모성재료 포함<sup>34)</sup>) 구입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 만성신부전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공단부담금 지급내역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되 구입일 현재 희귀 요양급여비 지급대상자에 한함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구입당시 등록자격이 있어야 하며, 퇴록 시 별도의 구분산정은 하지 않음

## 6. 보장구 구입비

### 가. 지급대상

#### 1) 대상 질환

대상질환 91개에 한함(붙임 3) 참조

#### 2)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3) 지급기준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34) 자동복막 소모성재료대는 기준금액(개당 10,420×10%=1,042원)중 본인부담금액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기준금액 초과분은 비급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나. 지급범위

-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붙임 4 참조)

## 다. 지급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

- 가)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나) 청구기간: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장애인 보장구 업체
- 라) 청구서식
  - ① 별지 제14호서식(희귀질환자 보장구 구입비 청구서)
  - ② 보장구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 가) 지원대상자 확인·검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장구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나)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장구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도 지급 가능함

## 7.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가. 지급대상

#### 1) 대상 질환

대상질환 94개에 한함(붙임 3)참조

#### 2) 대상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소득재산기준은 호흡보조기 대여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 3) 지급기준

-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나. 지급범위

#### 1) 호흡보조기<sup>35)</sup>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 ※ 호흡보조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2) 기침유발기<sup>36)</sup>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 ※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다. 지급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

- 가) 청구 가능한 대여료: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 나)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다) 청구기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라) 청구가능자

3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본소모품, 선택소모품 포함

36)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등 대여회사

마) 청구서식

- 지급 보증된 본인부담금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등 임대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료 및 소모품
    - ① 별지 제15호서식(회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 및 소모품 영수증 1부
  - 기침유발기 대여료
    - ① 별지 제15호서식(회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료 및 소모품
    - ① 별지 제15호서식(회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 및 소모품 영수증 1부
  - 기침유발기 대여료
    - ① 별지 제15호서식(회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1부

2)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가)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나) 지급절차

-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자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대·사용한 내역을 해당 월의 익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정액을 청구인의 신청계좌로 입금
- 등록 선정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으로 퇴록한 경우, 퇴록일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원칙(단, 일할 계산은 기계대여료에 한함)
  - ※ 단, 사망으로 인해 퇴록하는 경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격변동 확인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되,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

다) 지급 시 유의사항

-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침유발기만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8. 간병비

### 가. 지급대상

#### 1) 대상 질환

대상질환 95개에 한함(붙임 3) 참조

#### 2)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3) 지급기준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sup>37)</sup>**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종합 장애 1급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사례1&gt; 종합장애 1급(지체 2급(상지), 지체 2급(하지))인 경우, 간병비 신청가능</li> <li>• &lt;사례2&gt; 종합장애 1급(지체 1급, 지적 2급)인 경우, 간병비 신청가능</li> <li>• &lt;사례3&gt; 종합장애 1급(지체 2급, 지적 2급)인 경우, 간병비 신청불가</li> <li>• &lt;사례4&gt; 종합장애 1급(뇌병변 1급, 지적 2급)인 경우, 간병비 신청가능</li> <li>• &lt;사례5&gt; 종합장애 1급(뇌병변 2급, 지적 2급)인 경우, 간병비 신청불가</li> </ul>

### 나.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월 지급)

### 다. 지급절차

#### 1) 간병비 지급

##### 가) 지원대상자 확인

- 간병비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간병비 신청행위 없이 정기 정액지급

##### 나) 지급절차

-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청구인의 신청 계좌로 정기입금(최초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간병비 지원대상으로 최초 등록 선정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 변동시까지 매월 자동지급
- 등록 선정 및 자격 변동시 일할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되 간병비 지급당시

37)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장애인의 장애등급 등)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로 명시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함

등록된 해당 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격변동 확인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며,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

#### 다) 지급 시 유의사항

-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번호변경 등 수정사항은 매월 3일까지 입력 완료해야 해당 월 8일에 지급 절차 진행
- 지원대상자 계좌 등록 시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입금한도제한 통장은 입력 불가

## 9.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 가. 지급대상

#### 1) 대상 질환

대상질환 7개에 한함(붙임 3) 참조

#### 2)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3) 지급기준

-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나.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다. 지급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

-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간 한도액 내에서 수시청구 가능)
- 청구가능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 ① 별지 제16호서식(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식이 구입비 서면청구서)
- ②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2)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용 지급
  - 매월 청구된 구입비용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10. 지원금 환수 관리

- 퇴록 또는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 : 각 보건소에서 환수
  - 보건소에서 잘못 처리된 지원대상자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 → 그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수신처 : 의료복지부)에 문서로 통보한 후 입금
    - ※ 입금시 입금자명을 필히 보건소 기호로 하여 입금함  
(환수계좌 : 중소기업 047-000229-01-822/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계
  - ※ 단, 요양기관이 휴폐업 되었거나 6개월 이상 전산상계된 금액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 후 보건소에서 직접 환수)

## V 기타 사업관리

### 1. 예탁금 관리

#### 가. 예탁금 수납

- 시·군·구 보건소는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다음 분기 시·군·구 보건소별 예탁금을 시·군·구 보건소별 공단 수납계좌(국가 부담분 및 지자체 부담분)에 수납
  - ※ 계좌 입금 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금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소별 가상계좌로 입금
  - ※ 단, 1/4분기는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1월에 수납  
(계좌번호: 보건소별 가상계좌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월: 1,4,7,9월 예탁 시 분기내역 기재)

#### 나. 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집행은 총 예탁금 범위 내에서 운용

#### 다. 예탁금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소별 매월 의료비지원 내역을 익월 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 진료기간 중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진료건 진료개시일이 속한 날의 보건소 예탁금과 정산
- 환급금의 정산
  -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대상 질환 진료로 인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sup>38)</sup>은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의 관할 보건소 예탁금 계좌에 입금함 (2007년 이전 진료건으로 인한 발생분은 해당 보건소로 지급함)

38)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

-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 라. 예탁금 현황 보고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의료비지원 사업비 지급 및 미지급 현황,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 의료비 과다지원액 환수금 정산과일·내역 등 의료비지급내역을 매달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도에 통보함

## 마. 예탁금 이자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집행 하되, 이자 집행 잔액은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여 시·군·구 예탁금에 반영함 (이자 총액×시·군·구별 연간납부액/연간 예탁금 총액)

## 바.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 익년도 1월, 연 1회 회계 연도말 기준
  - ☞ 시·군·구 보건소별 예탁금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시·도)에서는 시·도(시·군·구 보건소)별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 보건소)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시·도는 당해연도 계획에 따라 예탁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이 초과하여 이루어진 시·군·구 보건소에 대하여 차기년도 예탁 시 추가로 예탁하게 하고, 집행된 사업비보다 예탁금이 초과해서 불입된 시·군·구 보건소는 차기년도 예탁 시 초과 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예탁하도록 당해년도 국고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여 최대한 예탁을 실시함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분기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 가.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분기별 교부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탁금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

### 나. 지원 결정의 취소

- 시·군·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지원 대상자 자격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의료비 등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 다. 부정수급 대상자의 환수

- 시·군·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의료비 등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군·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구 보건소장은 의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

#### 가. 관내 병·의원 대상

-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 홍보
- 병·의원 진료 시 발견된 희귀질환자에게 본 사업 안내에 대한 협조 요청

#### 나.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상

- 본 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극적 협조 요청

#### 다. 지역 주민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취지와 지급 절차 등 사업 안내

#### 라. 관련 단체 및 환우회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취지와 지급 절차 등 사업 안내

### 4. 방문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 가. 방문보건사업과의 연계

-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희귀질환자를 방문보건사업운영지침에 규정한 사업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

#### 나.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 근육병환자 등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활후견기관(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과 연결)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다. 가족건강사업과의 연계

- 희귀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페닐케톤뇨증 등 환아의 경우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가족건강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라. 민간단체와의 연계

- 희귀질환자가 해당질병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환자 자조모임 등에 등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 5.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가. 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사업지침 개발
- 희귀질환 헬프라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희귀질환 실무자 교육
- 희귀질환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 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 URL : <http://helpline.nih.go.kr>
- 희귀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실 운영
-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 안내
- 전문병원 안내
-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결

#### ※주소 및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 221호  
☎(043) 719.8777, 8778

## 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의료비(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의 예탁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등”이라 함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에 정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중 청구서에 의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2. “예탁금”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을 말한다(이하 “예탁금”이라 한다).
3. “분기별예탁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으로 통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결정액을 말한다.
4.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지급한 의료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2. 의료비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제4조(위탁 등)**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급에 관하여 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위탁계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개설)**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환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 입금 반송 관리계좌를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료비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비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교부내역 통보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매분기 각 시·군·구에 국 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내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전월 25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고, 입금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 공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예탁금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 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 내역을 각 시·군·구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각 시·군·구별 의료비 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군·구별 일일 예탁금 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 시점에 정산하고, 시·군·구별 배분금액을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군·구별 결산의 발생내역을 질병관리본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 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 납부 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관리)** 공단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급결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환자의 소속 시·군·구별 예탁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13조(예탁금의 지급원칙)** ① 공단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비의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의료비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건 중 청구오류나 지원 대상자의 자격정보 오류인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전에 해당기관에 반송하여 새로이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의료비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처리 후 지급한다.

③ 공단은 의료비 정산 결과 정상 지급건에 대하여는 의료비지급총괄표를 통하여 지급건 수 및 금액, 원천징수세액, 채권압류금액 등을 확인한 후 지급액을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급대상 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비의 지급 순위)** 공단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되, 예탁금 잔액의 부족으로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비, 호흡보조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순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착오지급시 정산)** ① 공단은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기관은 자격정리 지연 등으로 착오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이 당해 대상자에게 환수하여 공단의 제5조제4항의 환수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탁금의 정산)** 공단은 매 분기 예탁된 시·군·구별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매월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 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질병관리본부에 다음 분기 시작 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편

#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안내

- I.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II. 소득조사
- III. 재산조사
- IV. 부양의무자 조사



# I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1. 소득 및 재산조사의 의의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은 의료비지원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대상자의 자격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원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정기 재조사와 수시 재조사 실시

## 2. 소득 및 재산조사의 종류

### 가. 조사의 일반원칙

- 1)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나)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다)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라)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지원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
  - 마)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바)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의료비 등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일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 나. 신청조사

- 1) 조사의 목적
  - 회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신청에 대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장이 대상자의 자격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 2) 조사대상 및 내용
  - 회귀질환자(지원신청자)의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3) 조사시기
  - 의료비 지원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4) 조사결과의 처리
  - 의료비 지원 자격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환자)에게 통지
    - ※ 조사 후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최대 60일 이내에 해야 함

## 다. 확인조사(정기 재조사, 수시 재조사)

- 1) 조사의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장이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 재조사 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2) 조사대상 및 내용
  - 가) 정기 재조사
    - 회귀질환자(기존 지원대상자)의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나)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이 변동된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3) 조사시기

## 가) 정기 재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1월~6월 등록자 : 매년 상반기(4월~5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매년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 조사수행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매년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

## 나) 수시 재조사 : 수시 (해당사항에 한함)

## 4) 조사결과의 처리

## 가) 정기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2년경과 후 최초로 도달하는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나) 수시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 퇴록(변동이 있는 날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보받은 날로 퇴록)

## 라. 금융재산조사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 상세 기준은 제2편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안내(114~118쪽)에 설명된 사항 확인 후 조사에 반영
-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소에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 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가) 신규등록 신청자(환자)의 경우 : 신규 등록 시 실시
  - 나) 재조사대상자의 경우 : 정기재조사시기에 실시(매년 2회 상·하반기)
    - (2019년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19년도에 반드시 금융조사 실시할 것)
- 3)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3.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의료비지원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과약 곤란 자에 대한 소득과약(특히, 보장기관 확인소득 신청대상자인 경우 징구)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부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 4. 조사수행주체

### 가. 조사주체

- 1) 시·군·구 또는 읍·면·동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2)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3)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 나. 조사의 의뢰

- 1)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지원신청자(환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 의뢰함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 다.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정기 재조사, 수시 재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 취소 또는 지원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 가. 유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지원 결정 시에도 누락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나. 기타 행정사항

- 1) 개인정보의 보호
  - 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결정 등 지원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3)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4)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근 로 소 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 서 등록된 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 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 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매월
	사 업 소 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 타 사 업 소 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 산 소 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 타 소 득	공적이전소 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재 산	일반 재산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고정 : 1월 •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2회	
	일반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월 • 취득세:수시	• 재산세: 시가표준액 •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10월 • 취득세: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10월 • 취득세:수시	• 재산세: 시가표준액 •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10월 • 취득세:수시	• 재산세: 시가표준액 •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금융 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매월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양도성 예금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 “ \* ” 표시된 항목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그 외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 ('18. 12월말 기준)

기 관 (24개)		연계정보 (78종)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3)	산재보험급여,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국고용정보원(5)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지급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	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병무청(1)	군복무확인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교통부(1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입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대법원전월세거래정보, 대법원임대입차인정보
	보험개발원(2)	차량기준가액, 의무보험가입정보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보험증권 등)
기획 재정부	국세청(12)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농림축산 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무부(8)	교정시설입소자자료, 출입국자료(변동분), 출입국자료(이력),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소년원입출소자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 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3)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 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2)	공무원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행정안전부(3)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인적정보(타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G4C)를 이용한 정보 연계(15종)

\*\* 사업자등록정보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연계방식이 상이하어 별개로 나눔

## II 소득조사

### 1. 소득의 의미

#### ◦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가. 소득 산정기준

- 1)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2)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당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19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3)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폐업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일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4)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나. 실제소득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가)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라)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환자가구의 소득산정 시 지원대상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③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⑤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지원대상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지원대상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 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원대상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환자가구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⑥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⑦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⑧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⑨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 ⑩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①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②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 3)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가구특성 지출비용)

####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②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해당하는 금액
-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지원결정 후에는 의료비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③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②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③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⑤ 입양특례법 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 ⑥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②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자활소득 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가) 등록장애인인 대상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나) 25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대상자의

-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다)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다만,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라)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마)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신청대상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신청대상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 소득	50%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4.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인턴 참여자	근로·사업소득	30%
	근로소득	10%

5)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가) 1년에 6회 미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또는 친인척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대상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

나)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친인척 등(부양의무자 제외)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대상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 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라)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①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로서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②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마)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19년 1학기 해당 월 : '19.3~8월 / 2학기 해당 월 : '19.9~'20.2월 (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따르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파악이 우선함

#### 가. 근로소득

##### 1) 정 의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1항1호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 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한다.(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야하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9년 기타소득 과세최저 금액 125,000원)

##### 2) 유형

가)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나)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다)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3) 조사방법

#### 가) 상시근로자 소득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②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③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 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②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자활근로소득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②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프로그램 자활사업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3단계 청년구직 활동수당 30만원/월
    -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6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월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 열거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③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의 임금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 추진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 나. 사업소득

### 1) 농업소득

#### 가) 정의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 (농산물소득가격정보) 참조

####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2) 임업소득

#### 가) 정의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대상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3) 어업소득

####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漁家)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대상자에게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4) 기타 사업소득

####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 전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순서와 동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예)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 다. 재산소득

###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 2) 이자소득

####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 생활준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 3) 연금소득

#### 가) 정의 :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月割)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가)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나)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또한, 지급 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 단, 연금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 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 ①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② 소득관리 방법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대상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③ 소득반영 비율
  - 부양의무자의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신청자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④ 소득반영 방법

-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환자가구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건별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신청자(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신청자(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환자가구의 월소득으로 반영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예시** 1인가구 환자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득반영 비율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가구 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환자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256,051원)이하로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예시** 2인가구 환자가구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50만원(총 15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2건 총 60만원은 전액반영
  - 부양의무자 외의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435,979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50만원)은 초과금액인 64,021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64,021원×3월인 192,063원임
- 이에 동 환자가구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792,063원 (600,000원 + 192,063원)
- 동 환자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792,063원을 1/12개월로 나눈 66,005원에 해당

**예시** 1인가구 환자가 지난 1년간 부양의무자 A는 3회 각 30만원, 친인척 B는 2회(동일월) 각각 30만원, 총 5건, 150만원의 지원이 있어 5건의 지원금 중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지원금 90만원은 전액 반영
  - 친인척 B가 지난 1년 중 2건 각 30만원씩 지원한 경우 월별 금액을 합산한 60만원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256,051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43,949원을 반영함
  -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1,243,949원 (900,000원+343,949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853,504원을 390,445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32,537원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예시**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또는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환자가구가 2019.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19.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18.2~2019.1) 간, 2018.5월 2회, 2018.7월 1회, 2018.8월 3회, 2018.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19.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19.6월은 최근 1년(2018.7월~2019.6월)간 지원횟수가 6회로 성립, 2019.7월은 최근 1년(2018.8월~2019.7월)간 지원횟수가 5회로 미성립하여 2019.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 환자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의료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조사시점 기준 연속 3월간 계속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환자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의료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2019.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19.3월 조사 시 연속 3월(2019.1월~2019.3월)간 지원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2019.3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① 개념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직권으로 환자가구에 부과하는 소득임

사용대차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대차란 환자가구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li> <li>※ 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li> </ul> </li> </ul>

- ② 부과대상자 : 환자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 ③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 (예시) 신청자(환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 ※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신청자(환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 사용 대차로 판단
  -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 ㉠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④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4급지 기준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A×78%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 제3자 제공 전체							
• 제3자 제공 부분	A×20%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 참조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반영

- 4급지 7인 기준임대료 267,000원

- 4급지 8인 기준임대료 293,000원

(7인 기준임대료 267,000원 + 7인 기준임대료의 10%인 26,700원)

2)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가) 개념

- 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③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④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7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①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②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 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③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동 '지자체 지원으로 확인되는 급여'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환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다른 점은,

-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거나 조례로 지급 근거가 있다할지라도 지원 대상이 '신청자(환자) 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민 누구나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지급 가능한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례에 따른 신청자(환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함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소득 산정시 실비적 성격의 회의 수당 등은 제외 가능

-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④ 국외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3)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가) 정의

- ①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신청대상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신청대상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신청대상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 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신청대상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은 신규신청대상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나)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신청대상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를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

- ①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 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 ②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자

## 다)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은 산정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산정면제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가 산정가능 대상자로 판단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① 대상자가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하고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경우
- ② 기타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라)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기준

### ① 소득관리 방법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② 2019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금액

- 1일 66,80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 ※ '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기준

### ③ 산정기준

-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 ※ 상기 대상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신청대상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 마) 유의사항

### ①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신청대상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② 거주지 이전 시 신청대상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신청대상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에서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 ④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소득재산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신청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 소득 신고 유도

# III 재산조사

## 1. 재산가액 산정

### 가. 재산가액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 나. 재산의 의미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음

$$\text{재산} = \text{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text{자동차}$$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잔액이 남은 경우라도,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있음에 유의

## 2. 재산의 종류

### 가. 일반재산

#### 1) 일반재산의 범위 (주거용재산 포함)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대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바)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사)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아) 소득세법 제89조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카)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2)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가)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나) 적용한도

- 신청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

## 나. 금융재산

-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2) 보험업법 제2호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다. 자동차

- 1)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3.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가구의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대상자가 사용·수익하면 대상자의 재산에 포함
      - ※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하며,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상자의 재산에 반영함
    - ②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
    - ③ 대상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대상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 상속재산 지분율 :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 자녀는 ‘1’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대상자인 배우자와 대상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대상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가. 일반재산

#### 1)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건축물(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Rightarrow 1,000\text{만원}/0.9 = 1,111\text{만원}$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面·面지역, 충주시 面·面지역, 제천시 面·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面·面지역, 진주시 面·面지역, 김해시 面·面지역, 사천시 面·面지역, 거제시 面·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주도	0.9(전지역)

###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가) 정의: 신청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대상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주거용 이외 임차 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 제외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4) 선박·항공기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b>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b>
--------------------------------------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5) 동산

가)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 (2019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참조)
  -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6)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p>&lt;입목의 종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li> <li>○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굴</li> </ul>
---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같음 가능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9)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가) 조사대상자 :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액면가액)하도록 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를 들어 :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재산으로 반영함

- (참조) 대상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
  -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다)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라) 조회절차

- 신청대상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마)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수시조사 : 금융재산변동이 의심되는 때
  - 정기재조사 : 2년에 한번

바)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가)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나)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 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 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다) 유의사항

- 대상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적용)

나)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

- 적용대상 : 환자가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구는 미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대상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단위 : 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lt;사례1&gt;</b>	2019년 신규 결정된 신청대상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해지
공제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b>&lt;사례2&gt;</b>	2019년 신규 결정된 신청대상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해지
공제액	200	800 (이월한도 적용)	1,400 (이월한도 적용)	1,500	1,500	공제 미적용
<b>&lt;사례3&gt;</b>	2019년 10월 신규 결정된 대상자가 결정이전부터 5년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적금액	1,800	0	0	0	0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 ※ 장기저축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대상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3년간 연간 한도액 50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예를 들어, 첫해에 200만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연도 한도액은 이월한도 포함 800만원이 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 ※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을 적용함

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 다. 자동차

###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청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 3)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
    -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대상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대상자가 실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 자동차로 인하여 지원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생업용자동차,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대상자가 소유한 장애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대상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로 인정
  - ※ 단,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은 소유지분을 적용
-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대상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가구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환자가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환자가구 차량의 자동차 용도를 제공받아 반영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하고, 이외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
    - ※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소유 차량 1대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호의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이 또는 상이자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생업용자동차

-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 1) 정의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환자가구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환자가구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2) 조사방법

#### 가)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죽·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신청자(환자)가구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신청자(환자)가구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 때문에 신청자(환자)가구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 신청자(환자)가구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 등)한 경우에는 환자가구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환자)가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신청자(환자)가구의 재산으로만 반영하며, 처분하는 경우 위와 동일기준 적용

#### 나)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대상자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 다) 본인소비분 확인

-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대상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⑥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청자(환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 신청자(환자)가구에 지원한 의료비·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신청자(환자)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신청자(환자)가구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 ※ 증빙서류 :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라)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경과 개월 수 :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 차감액
  - 환자가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 부양의무자가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씩 차감

- ※ 예를 들어, 2019년 2월에 신규 신청한 환자가구의 2015년 1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해당가구의 2015년~2019년 중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각 해당 연도에 매달 차감

## 마. 부채

### 1)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증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금융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li> <li>•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li> <li>• 대부(중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a href="http://www.fcsc.kr">http://www.fcsc.kr</a>/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a href="http://www.clfa.or.kr">http://www.clfa.or.kr</a>/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li> </ul> </li> </ul>

###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가)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므로,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3) 조사방법

가)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 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나)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및 6개월 단위로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b>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li> <li>• 제공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li> <li>-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li> </ul> </li> <li>※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토록 연계 확대</li> </ul>

4)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잔액이 남은 경우라도,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가)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나)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 다)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라)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 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대상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바)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b>부채의 용도 확인 운영방법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등 금융회사 부채 중에서도 대상자나 부양 의무자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나</li> <li>① 2014년부터 개인 간 부채를 전면적으로 차감하지 않음(법원 확인 사채 제외)</li> </ul>

- ② 채무 부담행위가 있음에도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차감하지 않는 안정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③ 보장신청 이전에 재산을 담보로 부채를 얻어 이를 매달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 ④ 보장신청 이전에 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필요 없는 부채를 이자 부담하면서 얻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 등의 문제를 대상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부채는 용도의 확인 없이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보장기관(사군구 보건소)이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를 통해 부채차감 여부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가)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나)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은 환자가구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다) 부채의 사용처를 채무자(환자가구,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라)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 IV 부양의무자 조사

### 1. 부양의무자 조사 개요

#### 가.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1) 부양의무자 유무
- 2) 부양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 나. 부양의무자 조사 세부내용

##### 1)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나) 신청자(환자)의 부양의무자 중 신청자(환자)와 동일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환자)와 동일가구에 속하더라도 신청자(환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부양의무자에게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 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환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 ※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 참 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부양의무자와 신청자(환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 정보 및 국세청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신청자(환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 ① 신청자(환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 ② 신청자(환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 ③ 신청자(환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 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 목록 >

사유	증빙자료
군복무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외이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역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4)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조사 및 자료 제출 등

- 신청자(환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조사 상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특히,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은 부양의무자에게 실제소득에서 차감 제외하는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단,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양·거부 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 기존 신청자(환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여부를 결정

나) 조사 내용

- 신청자(환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례 지침 29~31쪽 참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 나) 조사방법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참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의,
  - 신청자(환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국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에 신청자(환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여부
  - ※ 단, 동 자료는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자료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보건소 담당자가 신청자(환자)의 생활실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실조사내용 등
  - ※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삭제되었음에 유의

나) 조사 방법

- 신청자(환자)에 대한 조사 : 신청자(환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되, 소명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보건소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신청자(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신청자(환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을 하고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자(환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 과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신청자(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또는 공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신청자(환자)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명서(신청자(환자) 작성)</li> <li>- 사실조사보고서(보건소 담당자 작성)</li> <li>- 신청자(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li> <li>- 지출실태조사표</li> <li>- 최근 1년간 신청자(환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인 필요시 1년이상 통장 입출금내역 추가자료 요구가능</li> </ul> </li> </ul> </li> <li>▶ 추가자료(담당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제출 요청, 부양의무자 작성)</li> <li>-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 판결문 및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 등 부양거부·기피·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li> </ul> </li> </ul>

- 우선적으로 기본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기본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생략)
- 추가자료는 기본자료 만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다) 사후관리

- 확인조사 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부양거부·기피로 확인(인정)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조사를 제외하되,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 신청자(환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부양거부

- 기피를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할 것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 특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신청자(환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신청자(환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신청자(환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 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 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신청자(환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2)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 가)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 나)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기업),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일희망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다)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

금,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보육·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지자체 지원 금액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3)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가)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보장기관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입학·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함
-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으로 함
-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

교육비 공제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8년 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 통계청의 2016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중 5~6분위 가구의 자녀 1인당 초·중·고 교육비 등 평균지출 현황 반영

-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
  - ※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생 학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이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인정 가능
-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방식은 학비 공제방식 준용)
  -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19년 233천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 의료비 및 간병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눈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 ※ '18. 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8. 7월부터 '20. 6월 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 필요

-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를 들어,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 압류소득
  -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원임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 함
    - ㉠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 ㉡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 ㉢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 ※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 월세공제액 : 아래의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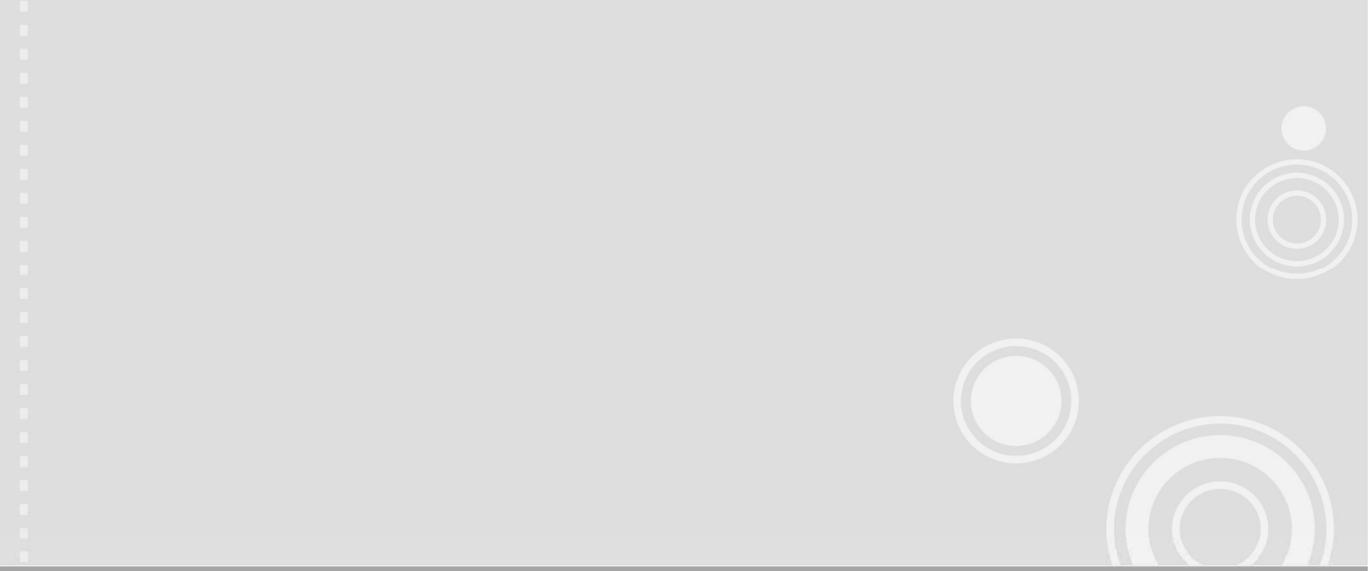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세종시, 4급지 : 그 외 지역

-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 :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어민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 4) 소득반영방법

가) 3)의 교육·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 등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

※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면제)
- [별지 제8호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면제)
- [별지 제9호서식] 희귀질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 [별지 제10호서식] 희귀질환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서[업체용]
- [별지 제12호의3서식] 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 [별지 제13호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희귀질환자 보장구 구입비 청구서
- [별지 제15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식이구입비 서면청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사용대차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사실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9호의 2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별지 제19호의 3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20호 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적합·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등록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메일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정보 제공		
세대주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용 의료 기관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치의				
환자 가구	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거여부 (미등록사유)	취업상태	전화번호		
	* 배우자 관계 <sup>1)</sup>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 가구	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전화번호	
신청자 (환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대상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요양급여비용종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보장구구입비 <input type="checkbox"/> 호흡보조기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기침유발기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간병비 <input type="checkbox"/> 특수조제분유 <input type="checkbox"/> 저단백 헛반									
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b> </div>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1) 해당자에 한함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b>희귀질환자 → 접수 → 소득·재산조사 → 검토</b> <b>→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 결정사항 통보</b>	
작성 요령	<p>1.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li> </ul> </li> <li>-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li> <li>·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li> </ul> </li> <li>·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li> </ul> </li> </ul> <p>2.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li> <li>·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등)</li> </ul> </li> <li>-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li> <li>·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li> <li>·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 2촌 이내의 혈족<sup>2)</sup></li> </ul> </li> </ul>
구비 서류	<p>1. 환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li> <li>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li> <li>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sup>3)</sup></li> <li>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li> <li>5)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 특례 등록확인으로 같음)</li> <li>6)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li> </ol> <p>2. 부양의무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ol> <p>2.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등본<sup>4)</sup></li> <li>2)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li> <li>3)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li> <li>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li> </ol>
유의 사항	<p>1.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부양의무자의 조사,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처리 (      년    월    일)

- 2)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외한 기준은 환자가구 기준 적용
- 3)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음.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4)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상자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td> </tr> </table>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대상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td> </tr> </table>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td> </tr> </table>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td> </tr> </table>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td> </tr> </table>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시장·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통보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정기재조사 기한 만료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회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여부 확인

[    ]년 [    ]월 [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p> <p>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p> <p>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p> <p>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p> <p>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p> <p>9)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p> <p>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p> <p>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p>
금융정보등의 범위
<p>1. 금융정보</p> <p>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p> <p>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p> <p>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p> <p>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p> <p>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p> <p>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p> <p>2. 신용정보</p> <p>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p> <p>3. 보험정보</p> <p>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p> <p>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유의 사항
<p>○ 이 동의서는 「회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귀질환 의료비지원 신청 시 제출합니다.</p> <p>○ 동의자(의료비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금융정보등은 「회귀질환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 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귀질환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p>

[별지 제4호서식]

(앞면)

<b>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b>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p><b>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li> <li>-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내역, 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li>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li>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li> <li>-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li> <li>-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li> <li>- 진단 및 유관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li> </ul> <p><b>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병코드, 질환명,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특례 적용 만료일, 건강보험정보, 장기이식관련정보, 장애등급정보, 주민등록등본</li> <li>-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li> </ul> <p><b>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b></p> <p><b>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b></p>			
개인정보 <sup>8)</sup> 의 수집(타 기관으로부터 수집 포함)·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sup>9)</sup> 의 수집(타 기관으로부터 수집 포함)·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뒷면에 계속됩니다.

-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에 관한 정보(상병코드, 질환명,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특례 적용 만료일, 건강보험정보, 장기이식관련정보, 장애등급정보, 주민등록등본,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뒷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퇴록 후 5년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코드, 지원대상구분	퇴록 후 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의 의료비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코드, 질환명, 예금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원대상구분	퇴록 후 3년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6. 대상자가 해당 확인서 작성시점에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동행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성명	대리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구원용)

### 환자가구 및 환자의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 진단 및 유관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4. 환자가구 및 환자의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명)
			(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 뒷면에 계속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h2 style="margin: 0;">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h2> <h3 style="margin: 0;">(소득·재산조사 면제)</h3>										
등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 환 명	(상병코드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이메일주소					
이 용 의 료 기 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치 의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총계 (A+B+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 부분 진료비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원	원				원				원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보험증 사본 1부</li> <li>2.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li> <li>3.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li> <li>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li> </ol>									
<p>※ 혈우병 입원 특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우병 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li> </ul> <p>※ 지원대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li> </ul> <p>※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 한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지 제13호(혈우병 입원 특례자 청구서)서식을 작성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함</li> </ul>										



[별지 제10호서식]

회귀질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장애명			
가구원 인적사항		소			득			재		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공적이전	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용도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	금융부채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소			득			재		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공적이전	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	금융부채

위의 회귀질환자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 시·군·구 통합조사팀

(조사자 소속 및 직위 : \_\_\_\_\_ 성명 : \_\_\_\_\_ (전화 : \_\_\_\_\_))

[별지 제11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신청인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관할보건소		
요양기관			요양기관번호			
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외래진료일						
총계 (A+B+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 부분 진료비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원	원		원		원	
서면청구 사유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혈우병 입원특례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서면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검토의견						
지급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신청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구분산정시 진료비상세내역 첨부가능) 원본 1부 *산정특례 지원상병 및 산정특례 미적용건의 경우도 의사 소견서(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위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만 사용.

[별지 제12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신청인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관할보건소	
입금은행명				예금주	
신청계좌					
요양기관				요양기관번호	
진료기간	년 월 일 부터 ( 일간)				
총계 (A+B+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 부분 진료비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원	원		원	원	
<p>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합니다.</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p>					
<p>※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자부담액(복막관류90%+자동복막재료대 기준가액의 90%)</li> <li>- 본인부담액(복막관류10%+자동복막재료대 기준가액의 10%) = 정부지원부분</li> <li>- 비급여 부분 진료비(자동복막 기준가액을 초과한 금액)</li> </ul>					
지급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등	처방전 및 업체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원본은 공단 현금급여 지급팀에서 보관)				

※ 위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성신부전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만 사용

[별지 제12호의2서식]

<b>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서[업체용]</b>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진료기간	년 월 일 부터 ( 일간)		
청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업체전화번호	
업체주소			
총계 (A+B+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 부분 진료비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원	원	원	원
<p>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청구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50px;">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p>			
<p>※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자부담액(복막관류90%+자동복막재료대 기준가액의 90%)</li> <li>- 본인부담액(복막관류10%+자동복막재료대 기준가액의 10%) = 정부지원부분</li> <li>- 비급여 부분 진료비(자동복막 기준가액을 초과한 금액)</li> </ul>			
지급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p>1. 처방전 및 업체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원본은 공단 현금급여 지급팀에서 보관)</p> <p>2. [별지 제12호의3서식] 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위임장은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제출)</p>		

※ 위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성신부전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만 사용

[별지 제12호의3서식]

## 만성신부전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구 분	금 액	비 고
복막관류액	본인부담금(10%)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본인부담금(10%)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재료를 수령하였으며 의약품판매업소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의약품판매업소 담당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재료 사용 환자 또는 보호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위임장 작성 년, 월, 일은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일로 기입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청구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신청인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주소			관할보건소		
요양기관				요양기관번호		
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총계 (A+B+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 부분 진료비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원	원		원		원	
<p>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합니다.</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년 월 일</p> <p>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p>						
<u>검토의견</u>						
지급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신청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사본1부					

[별지 제14호서식]

희귀질환자 보장구 구입비 청구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상병코드 : )			
신청인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관할보건소				
입금은행명		예금주		
신청계좌				
신청금액	구입비 총액 (A+B+C)	급여부분		비급여 본인부담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액 (정부지원부분) (B)	
보장구구입비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근육병환자 등에게 지원되는 [보장구 구입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검토의견				
총 지급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 신청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류 첨부 - 보장구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별지 제15호서식]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청구서([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수진자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병명	(상병코드 : )		관할보건소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기기 월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 ]㉠ [ ]㉡)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기 기본소모품 <input type="checkbox"/> 기침유발기 월 대여료	
인공호흡기	대여업소명		청구기간	~
	모델명		관리번호	
기침유발기	대여업소명		청구기간	~
	모델명		관리번호	
인공호흡기 계약금액 (기기 월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압력형 <input type="checkbox"/> 볼륨형			원
기본소모품 (공통)	<input type="checkbox"/> 1세트 <input type="checkbox"/> 2세트			원
선택소모품㉠	<input type="checkbox"/> 일반 일체형 커넥터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원
	<input type="checkbox"/>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input type="checkbox"/> 1세트 <input type="checkbox"/> 2세트	원
선택소모품㉡	<input type="checkbox"/>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input type="checkbox"/> 겔	원
	<input type="checkbox"/> 코입마스크(Facial Mask)		<input type="checkbox"/> 실리콘	원
기침유발기				원
신청금액	총계 (A+B+C)	급여부분		비급여 본인부담 (C)
		보험자부담액 (A)	본인부담금(정부지원부분) (B)	
총계	원	원	원	원
수령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대여업소 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위와 같이 [인공호흡기, 기본소모품, 선택소모품㉠, 선택소모품㉡, 기침유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b>				
검토의견				
첨부서류	※ 신청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류 첨부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1부 - 인공호흡기 기본소모품,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또는 ㉡ 영수증 1부			



[별지 제17호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환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환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input type="checkbox"/> 환자가구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환자가구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 20 . .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일부 보조 <input type="checkbox"/> 육아 · 가사노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환자가구)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①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 특별자치시장 · 특별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사 실 조 사 보 고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조사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9호의3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주소(소재지):

3. 지원 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보장구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간병비
<input type="checkbox"/> 호흡보조기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기침유발기 대여료	<input type="checkbox"/> 특수식이 구입비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

직인



# 붙임

- <붙임 1>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 <붙임 2> 한시적 지원 대상질환
- <붙임 3>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범위별 대상 질환
- <붙임 4> 보장구 지원액 관련 시행규칙
- <붙임 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 <붙임 6>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명단
- <붙임 7>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붙임 1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붙임 1>

##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1	<b>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대상질환</b>					
	1	A31.9	비정형마이코박테륨증, 가족형, X연관	2019년 추가	극희귀	
	2	A81.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희귀	
	3	A81.0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희귀	
	4	D55.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희귀	
	5	D55.0	잠두중독		희귀	
	6	D55.0	G6PD결핍빈혈		희귀	
	7	D55.2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희귀	
	8	D55.2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형 빈혈		희귀	
	9	D55.2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희귀	
	10	D55.2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희귀	
	11	D55.2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희귀	
	12	D56.0	알파지중해빈혈		희귀	
	13	D56.1	베타지중해빈혈		희귀	
	14	D56.1	쿠올리빈혈		희귀	
	15	D56.1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희귀	
	16	D56.1	중간형 지중해빈혈		희귀	
	17	D56.1	중증 지중해빈혈		희귀	
	18	D56.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희귀	
	19	D56.3	지중해빈혈 소질		희귀	
	20	D56.4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희귀	
	21	D59.3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22	D59.5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희귀	
	23	D60.0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희귀	
	24	D61.0	체질성 무형성빈혈		희귀	
	25	D61.0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희귀	
	26	D61.0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희귀	
	27	D61.0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희귀	
	28	D61.0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희귀	
	29	D61.0	가족성 저형성빈혈		희귀	
	30	D61.0	판코니빈혈		희귀	
	31	D61.0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희귀	
	32	D61.3	특발성 무형성빈혈		희귀	
	33	D61.9	저형성빈혈 NOS		희귀	
	34	D61.9	골수형성저하		희귀	
	35	D61.9	범골수황폐		희귀	
	36	D64.4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희귀	
	37	D64.4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희귀	
38	D66	유전성 제8인자결핍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39	D66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희귀
	40	D66	혈우병 NOS		희귀
	41	D66	A형혈우병		희귀
	42	D66	고전적 혈우병		희귀
	43	D67	유전성 제9인자결핍		희귀
	44	D67	크리스마스병		희귀
	45	D67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희귀
	46	D67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희귀
	47	D67	B형혈우병		희귀
	48	D68.0	폰빌레브란트병		희귀
	49	D68.0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희귀
	50	D68.0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희귀
	51	D68.0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희귀
	52	D68.1	유전성 제11인자결핍		희귀
	53	D68.1	C형혈우병		희귀
	54	D68.1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희귀
	55	D68.2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희귀
	56	D68.2	선천성 무피브리노제혈증		희귀
	57	D68.2	AC글로불린결핍		희귀
	58	D68.2	프로악셀레린결핍		희귀
	59	D68.2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희귀
	60	D68.2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희귀
	61	D68.2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희귀
	62	D68.2	제7인자[안정]의 결핍		희귀
	63	D68.2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희귀
	64	D68.2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희귀
	65	D68.2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희귀
	66	D68.2	이상피브리노제혈증(선천성)		희귀
	67	D68.2	저프로콘버틴혈증		희귀
	68	D68.2	오우렌병		희귀
	69	D68.5	항트롬빈결핍	2019년 추가	극희귀
	70	D68.5	단백질C결핍	2019년 추가	극희귀
	71	D68.5	단백질S결핍	2019년 추가	극희귀
	72	D68.6	항인지질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73	D69.1	정상적 혈소판결손		희귀
	74	D69.1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희귀
	75	D69.1	글란즈만병		희귀
	76	D69.1	그레이혈소판증후군		희귀
	77	D69.1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희귀
	78	D69.1	혈소판병증		희귀
	79	D69.30	에반스증후군		희귀
	80	D70	무과립구증(D70.8)		희귀
	81	D70	무과립구성 안지나(D70.8)		희귀
	82	D70	선천성 무과립구증(D70.8)	2019년 추가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83	D70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8)		회귀
	84	D70	코스트만병 (D70.8)		회귀
	85	D70	호중구감소 NOS (D70.8)		회귀
	86	D70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8)		회귀
	87	D70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8)		회귀
	88	D70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8)		회귀
	89	D70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8)		회귀
	90	D70	베르너-슐츠병 (D70.8)	2019년 추가	회귀
단, 연번 80~90번은 해당되나, D70.0(호중구감소성 발열) 및 D70.8(기타 무과립구증)은 제외					
	91	D71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회귀
	92	D71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회귀
	93	D71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회귀
	94	D71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회귀
	95	D71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회귀
	96	D76.1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회귀
	97	D76.1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회귀
	98	D76.1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회귀
	99	D76.3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회귀
	100	D76.3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회귀
	101	D80.0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회귀
	102	D80.0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회귀
	103	D80.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회귀
	104	D80.0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019년 추가	회귀
	105	D80.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회귀
	106	D80.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회귀
	107	D80.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회귀
	108	D80.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회귀
	109	D80.2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회귀
	110	D80.3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회귀
	111	D80.4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회귀
	112	D80.5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거의 정상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회귀
	113	D80.6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회귀
	114	D80.8	카파경쇄결핍		회귀
	115	D80.8	카파경쇄결핍		회귀
	116	D81.0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회귀
	117	D8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회귀
	118	D81.2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회귀
	119	D81.3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회귀
	120	D81.4	네젤로프증후군		회귀
	121	D81.5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122	D81.6	주조직적합성복합체I형결핍		희귀
	123	D81.6	노출림프구증후군		희귀
	124	D81.7	주조직적합성복합체II형결핍		희귀
	125	D81.8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희귀
	126	D81.8	오멘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127	D81.9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희귀
	128	D82.0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희귀
	129	D82.0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희귀
	130	D82.1	디쥬지증후군		희귀
	131	D82.1	인두낭증후군		희귀
	132	D82.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희귀
	133	D82.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희귀
	134	D82.2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희귀
	135	D82.3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희귀
	136	D82.3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희귀
	137	D82.4	고면역글로블린E증후군		희귀
	138	D83.0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희귀
	139	D83.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희귀
	140	D83.2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 항체를 동 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희귀
	141	D84.0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희귀
	142	D84.1	보체계통의 결손		희귀
	143	D84.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희귀
	144	D86.0	폐의 사르코이드증		희귀
	145	D86.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희귀
	146	D86.2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 르코이드증		희귀
	147	D86.3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희귀
	148	D86.8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희귀
	149	D86.8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 (H22.1*)		희귀
	150	D86.8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 (G53.2*)		희귀
	151	D86.8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희귀
	152	D86.8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희귀
	153	D86.8	사르코이드근염(M63.3*)		희귀
	154	D86.8	포도막귀밑샘염		희귀
	155	E16.10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2019년 추가	극희귀
	156	E20.1	거짓 부갑상선기능저하증	2019년 추가	극희귀
	157	E22.0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158	E22.0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희귀
	159	E22.0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희귀
	160	E23.0	콜만증후군		희귀
	161	E23.0	쉬한증후군		희귀
	162	E24.0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희귀
	163	E24.0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희귀
	164	E24.0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희귀
	165	E24.1	넬슨증후군		희귀
	166	E24.3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희귀
	167	E25.0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희귀
	168	E25.0	선천성 부신증식증		희귀
	169	E25.0	21-수산화효소결핍		희귀
	170	E25.0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희귀
	171	E25.9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희귀
	172	E26.8	바터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173	E27.1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희귀
	174	E27.1	가족성 부신피질부전 NOS	2019년 추가	희귀
	175	E27.1	애디슨병		희귀
	176	E27.1	자가면역성 부신염		희귀
	177	E27.2	애디슨발증		희귀
	178	E27.2	부신발증		희귀
	179	E27.2	부신피질발증		희귀
	180	E27.4	부신출혈		희귀
	181	E27.4	부신경색증		희귀
	182	E27.4	부신피질부전 NOS		희귀
	183	E27.4	저알도스테론증		희귀
	184	E34.8	송과선 기능이상		희귀
	185	E34.8	조로증		희귀
	186	E55.0	활동성 구루병		희귀
	187	E55.0	영아골연화증		희귀
	188	E55.0	연소성 골연화증		희귀
	189	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희귀
	190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희귀
	191	E70.2	타이로신대사장애		희귀
	192	E70.2	알카톤뇨증		희귀
	193	E70.2	조직흑갈병		희귀
	194	E70.2	타이로신혈증		희귀
	195	E70.2	타이로신증		희귀
	196	E70.3	눈피부백색증		희귀
	197	E70.3	눈백색증		희귀
	198	E70.3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희귀
	199	E70.3	교차증후군		희귀
	200	E70.3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희귀
	201	E70.3	바르텐브르그 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202	E70.8	히스티딘대사장애		희귀
	203	E70.8	트립토판대사장애		희귀
	204	E71.0	단풍시럽노병		희귀
	205	E71.1	고류신-이소류신혈증		희귀
	206	E71.1	고발린혈증		희귀
	207	E71.1	메틸말론산혈증		희귀
	208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희귀
	209	E71.1	프로피온산혈증		희귀
	210	E71.3	지방산대사장애		희귀
	211	E71.3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של더]		희귀
	212	E71.3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희귀
	213	E71.3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2019년 추가	희귀
	214	E72.0	아미노산운반장애		희귀
	215	E72.0	시스틴축적병(N29.8*)	2019년 추가	희귀
	216	E72.0	시스틴증		희귀
	217	E72.0	시스틴뇨증		희귀
	218	E72.0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희귀
	219	E72.0	하르트넵병		희귀
	220	E72.0	로베증후군		희귀
	221	E72.1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희귀
	222	E72.1	시스타타이오닌뇨증		희귀
	223	E72.1	호모시스틴뇨		희귀
	224	E72.1	메타이오닌혈증		희귀
	225	E72.1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희귀
	226	E72.1	고호모시스틴혈증	2019년 추가	희귀
	227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희귀
	228	E72.2	아르지닌혈증		희귀
	229	E72.2	아르지닌속신산뇨		희귀
	230	E72.2	시트룰린혈증		희귀
	231	E72.2	고암모니아혈증		희귀
	232	E72.3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희귀
	233	E72.3	글루타르산뇨		희귀
	234	E72.3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희귀
	235	E72.3	고라이신혈증		희귀
	236	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희귀
	237	E72.4	오르니틴혈증(I, II형)		희귀
	238	E72.4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2019년 추가	희귀
	239	E72.5	글라이신대사장애		희귀
	240	E72.5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희귀
	241	E72.5	고프롤린혈증(I, II형)		희귀
	242	E72.5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희귀
	243	E72.5	사르코신혈증		희귀
	244	E72.8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245	E72.8	감마글루타미르회로의 장애		회귀
	246	E73.0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회귀
	247	E74.0	글리코젠축적병		회귀
	248	E74.0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2019년 추가	회귀
	249	E74.0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2019년 추가	회귀
	250	E74.0	심장글리코젠증		회귀
	251	E74.0	안데르센병		회귀
	252	E74.0	코리병		회귀
	253	E74.0	포르브스병		회귀
	254	E74.0	허스병		회귀
	255	E74.0	맥아들병		회귀
	256	E74.0	폼페병		회귀
	257	E74.0	타루이병		회귀
	258	E74.0	폰기에르케병		회귀
	259	E74.0	간인산화효소결핍		회귀
	260	E74.2	갈락토스대사장애		회귀
	261	E74.2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회귀
	262	E74.2	갈락토스혈증		회귀
	263	E74.4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회귀
	264	E74.4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회귀
	265	E74.4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회귀
	266	E74.4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회귀
	267	E74.8	옥살산뇨		회귀
	268	E75.0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회귀
	269	E75.0	샌드호프병		회귀
	270	E75.0	테이-삭스병		회귀
	271	E75.0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NOS		회귀
	272	E75.0	성인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회귀
	273	E75.0	연소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회귀
	274	E75.1	강글리오시드증 NOS		회귀
	275	E75.1	GM <sub>1</sub> -강글리오시드증		회귀
	276	E75.1	GM <sub>3</sub> -강글리오시드증		회귀
	277	E75.1	뮤코지질증 IV		회귀
	278	E75.2	페프리(-앤더슨)병		회귀
	279	E75.2	고웨병		회귀
	280	E75.2	크라베병		회귀
	281	E75.2	니만-픽병		회귀
	282	E75.2	화버증후군		회귀
	283	E75.2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회귀
	284	E75.2	설파테이스결핍		회귀
	285	E75.4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회귀
	286	E75.4	바텐병		회귀
	287	E75.4	얀스키-빌쇼스키병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288	E75.4	쿠프스병		희귀
	289	E75.4	스필라이어-보그트병		희귀
	290	E75.5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희귀
	291	E75.5	월만병		희귀
	292	E76.0	I형 점액다당류증		희귀
	293	E76.0	헨러증후군		희귀
	294	E76.0	헨러-샤이에증후군		희귀
	295	E76.0	샤이에증후군		희귀
	296	E76.1	II형 점액다당류증		희귀
	297	E76.1	헨터증후군		희귀
	298	E76.2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희귀
	299	E76.2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희귀
	300	E76.2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희귀
	301	E76.2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희귀
	302	E76.2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희귀
	303	E77.0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희귀
	304	E77.0	뮤코지질증II [I-세포병]		희귀
	305	E77.0	뮤코지질증III[거짓헨러다발디스트로피]		희귀
	306	E77.1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희귀
	307	E77.1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희귀
	308	E77.1	푸코스축적증		희귀
	309	E77.1	마노스축적증		희귀
	310	E77.1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희귀
	311	E79.1	레쉬-니한증후군		희귀
	312	E80.2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희귀
	313	E80.2	포르피린증 NOS		희귀
	314	E80.2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
	315	E83.0	구리대사장애		희귀
	316	E83.0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희귀
	317	E83.0	월슨병		희귀
	318	E83.1	혈색소증	2019년 추가	희귀
	319	E83.2	장병성 말단피부염	2019년 추가	극희귀
	320	E83.3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희귀
	321	E83.3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희귀
	322	E83.3	가족성 저인산혈증		희귀
	323	E83.3	저인산효소증		희귀
	324	E83.3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희귀
	325	E83.3	비타민D저항구루병		희귀
	326	E84.0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희귀
	327	E84.1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희귀
	328	E84.1	원위장폐쇄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329	E841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희귀
	330	E85.0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331	E85.0	가족성 지중해열		회귀
	332	E85.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회귀
	333	E85.1	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회귀
	334	E85.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회귀
	335	E85.2	상세불명의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회귀
	336	E85.4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회귀
	337	E85.4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회귀
	338	E88.0	알파-1-항트립신결핍	2019년 추가	극회귀
	339	E88.1	선천성 전신지방디스트로피	2019년 추가	극회귀
	340	F80.3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 [란다우-클레프너]	2019년 추가	회귀
	341	F84.2	레트증후군		회귀
	342	G10	헌팅톤병		회귀
	343	G10	헌팅톤무도병		회귀
	344	G11.0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회귀
	345	G11.1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회귀
	346	G11.1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 성 운동실조		회귀
	347	G11.1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 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회귀
	348	G11.1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 뇌성 운동실조		회귀
	349	G11.1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회귀
	350	G11.1	X-연관 열성 척주소뇌성 운동실조		회귀
	351	G11.2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회귀
	352	G11.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회귀
	353	G11.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회귀
	354	G11.4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회귀
	355	G11.8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회귀
	356	G11.9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회귀
	357	G11.9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회귀
	358	G11.9	유전성 소뇌의 변성		회귀
	359	G11.9	유전성 소뇌의 병		회귀
	360	G11.9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회귀
	361	G12.0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회귀
	362	G12.1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회귀
	363	G12.1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과지오-론데]		회귀
	364	G12.1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회귀
	365	G12.1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회귀
	366	G12.1	원위 척수성 근위축		회귀
	367	G12.1	연소형, III형[쿠젤베르그-벨란데] 척수성 근위축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368	G12.1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회귀
	369	G12.2	운동신경세포병	G12.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 병은 제외	회귀
	370	G12.8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회귀
	371	G12.9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회귀
	372	G23.0	할리포르텐-스파츠병	2019년 추가	회귀
	373	G23.0	색소성 담창구변성	2019년 추가	회귀
	374	G23.1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 스제위스키]		회귀
	375	G25.8	강직인간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376	G31.8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회귀
	377	G35	다발경화증		회귀
	378	G35	다발경화증 NOS		회귀
	379	G35	뇌간(~의) 다발경화증		회귀
	380	G35	척수(~의) 다발경화증		회귀
	381	G35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회귀
	382	G35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회귀
	383	G36.0	시신경척수염[데빅병]	2019년 추가	회귀
	384	G40.4	레녹스-가스토증후군		회귀
	385	G40.4	웨스트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386	G41.0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87	G41.0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88	G41.1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89	G41.1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회귀
	390	G41.2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91	G41.8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92	G41.9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회귀
	393	G47.4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2019년 추가	회귀
	394	G51.2	멜커슨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395	G51.2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회귀
	396	G56.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회귀
	397	G57.80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2019년 추가	회귀
	398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회귀
	399	G60.0	샤르코-마리-투스질환		회귀
	400	G60.0	테제린-소타스병		회귀
	401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회귀
	402	G60.0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회귀
	403	G60.0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회귀
	404	G60.0	루시-레비증후군		회귀
	405	G61.0	길랭-바레증후군		회귀
	406	G61.0	밀러휘셔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407	G61.8	다초점 운동 신경병증(전도차단동반)	2019년 추가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408	G61.8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2019년 추가	회귀
	409	G70.0	중증근무력증		회귀
	410	G70.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회귀
	411	G71.0	근디스트로피		회귀
	412	G71.0	뒤췌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회귀
	413	G71.0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회귀
	414	G71.0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 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회귀
	415	G71.0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회귀
	416	G71.0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회귀
	417	G71.0	지대 근디스트로피		회귀
	418	G71.0	눈 근디스트로피		회귀
	419	G71.0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회귀
	420	G71.0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회귀
	421	G71.0	중증[뒤췌] 근디스트로피		회귀
	422	G71.1	근긴장장애		회귀
	423	G71.1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회귀
	424	G71.1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회귀
	425	G71.1	증상성 근긴장증		회귀
	426	G71.1	선천성 근긴장증 NOS		회귀
	427	G71.1	우성[툼슨] 선천성 근긴장증		회귀
	428	G71.1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회귀
	429	G71.1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회귀
	430	G71.1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회귀
	431	G71.1	거짓근긴장증		회귀
	432	G71.2	선천성 근병증		회귀
	433	G7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회귀
	434	G7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회귀
	435	G71.2	중심핵 병		회귀
	436	G71.2	미세심 병		회귀
	437	G71.2	다발심 병		회귀
	438	G71.2	근섬유형 불균형		회귀
	439	G7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회귀
	440	G71.2	네말린근병증		회귀
	441	G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회귀
	442	G71.3	멜라스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443	G71.9	유전성 근병증 NOS		회귀
	444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2019년 추가	회귀
	445	G73.1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2019년 추가	회귀
	446	G95.0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회귀
	447	H35.01	코즈	2019년 추가	회귀
	448	H35.05	일스병	2019년 추가	극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449	H35.51	색소망막염		회귀
	450	H35.58	스타르가르트병		회귀
	451	H35.5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2019년 추가	회귀
	452	H35.5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2019년 추가	회귀
	453	H49.8	킨스-세이어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454	H51.8	동안실행증(失行症), 코간형	2019년 추가	극회귀
	455	I27.0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회귀
	456	I27.8	아이젠멘거복합		회귀
	457	I27.8	아이젠멘거증후군		회귀
	458	I42.0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회귀
	459	I42.1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회귀
	460	I42.1	비대성 대동맥하협착		회귀
	461	I42.2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회귀
	462	I42.3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회귀
	463	I42.3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회귀
	464	I42.3	뢰플러심내막염		회귀
	465	I42.4	심내막탄력섬유증		회귀
	466	I42.4	선천성 심근병증		회귀
	467	I47.2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성 빈맥	2019년 추가	극회귀
	468	I67.5	모야모야병		회귀
	469	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회귀
	470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회귀
	471	I82.0	버드-키아리증후군		회귀
	472	J84.0	폐포단백질증		회귀
	473	J84.18	특발성 폐섬유증		회귀
	474	K00.51	불완전상아질형성	2019년 추가	극회귀
	475	K50.0	소장의 크론병		회귀
	476	K50.1	대장의 크론병		회귀
	477	K50.8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회귀
	478	K74.3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회귀
	479	K75.4	자가면역성 간염		회귀
	480	K83.0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19년 추가	회귀
	481	L10.0	보통천포창		회귀
	482	L10.2	낙엽천포창		회귀
	483	L12.0	수포성 유사천포창		회귀
	484	L12.1	흉터유사천포창		회귀
	485	L12.1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회귀
	486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회귀
	487	M08.0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회귀
	488	M08.0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회귀
	489	M08.1	연소성 강직척추염		회귀
	490	M08.2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491	M08.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희귀
	492	M08.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희귀
	493	M30.0	결절성 다발동맥염		희귀
	494	M30.1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치그-스트라우스]		희귀
	495	M30.2	연소성 다발동맥염		희귀
	496	M31.0	굿파스처증후군		희귀
	497	M31.1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희귀
	498	M31.1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희귀
	499	M31.2	치사중간선육아종		희귀
	500	M31.3	베게너육아종증		희귀
	501	M31.3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희귀
	502	M31.4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수]		희귀
	503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희귀
	504	M32.1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희귀
	505	M33.0	연소성 피부근염		희귀
	506	M33.1	기타 피부근염		희귀
	507	M33.2	다발근염		희귀
	508	M34.0	진행성 전신경화증		희귀
	509	M34.1	크레스트증후군		희귀
	510	M34.1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희귀
	511	M34.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희귀
	512	M34.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희귀
	513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		희귀
	514	M35.0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희귀
	515	M35.0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희귀
	516	M35.0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희귀
	517	M35.0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희귀
	518	M35.1	혼합결합조직병		희귀
	519	M35.2	베체트병		희귀
	520	M35.3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희귀
	521	M35.4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희귀
	522	M35.5	다초점 섬유경화증		희귀
	523	M35.6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희귀
	524	M61.1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희귀
	525	M8220/0 ,(D12.6)	가족섬종폴립증	2019년 추가	희귀
	526	M88.0	두개골의 파젯병		희귀
	527	M88.8	기타 뼈의 파젯병		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528	M88.9	상세불명의 뼈의 파열병		회귀
	529	M89.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회귀
	530	M94.1	재발성 다발연골염		회귀
	531	N04.0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2	N04.0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3	N04.1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4	N04.1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5	N04.1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6	N04.1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7	N04.2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8	N04.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39	N04.4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0	N04.5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1	N04.5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2	N04.6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3	N04.6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4	N04.7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545	N04.7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단, N04.0~N04.7은 선천성에 한함		
	546	N25.1	신장성 요붕증		회귀
	547	P35.0	선천성 풍진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548	Q03.1	덴디-위커증후군		회귀
	549	Q04.3	무뇌이랑증		회귀
	550	Q04.3	활택뇌증	2019년 추가	극회귀
	551	Q04.3	큰뇌이랑증	2019년 추가	회귀
	552	Q04.3	소뇌무발생	2019년 추가	극회귀
	553	Q04.6	분열뇌증		회귀
	554	Q05.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회귀
	555	Q05.1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회귀
	556	Q05.1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회귀
	557	Q05.1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회귀
	558	Q05.2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회귀
	559	Q05.2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회귀
	560	Q05.3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회귀
	561	Q05.4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회귀
	562	Q05.5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회귀
	563	Q05.6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회귀
	564	Q05.6	이분척추 NOS		회귀
	565	Q05.6	이분흉요추 NOS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566	Q05.7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회귀
	567	Q05.7	이분요천추 NOS		회귀
	568	Q05.8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회귀
	569	Q05.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회귀
	570	Q06.2	척수이개증		회귀
	571	Q07.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회귀
	572	Q11.2	렌즈소안구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573	Q14.1	X-연관 연소성 망막분리	2019년 추가	극회귀
	574	Q17.2	소이증(小耳症)	2019년 추가	회귀
	575	Q20.0	총동맥간		회귀
	576	Q20.0	동맥간존속		회귀
	577	Q20.1	이중출구우심실		회귀
	578	Q20.1	타우시그-빙증후군		회귀
	579	Q20.2	이중출구좌심실		회귀
	580	Q20.3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2019년 추가	회귀
	581	Q20.3	대동맥의 우측전위	2019년 추가	회귀
	582	Q20.3	대혈관의 (완전)전위	2019년 추가	회귀
	583	Q20.4	단일심실		회귀
	584	Q20.5	방실연결불일치	2019년 추가	회귀
	585	Q20.5	수정혈관전위	2019년 추가	회귀
	586	Q20.5	좌측전위	2019년 추가	회귀
	587	Q20.5	심실내번	2019년 추가	회귀
	588	Q21.2	방실중격결손	2019년 추가	회귀
	589	Q21.2	총방실관	2019년 추가	회귀
	590	Q21.2	심내막용기결손	2019년 추가	회귀
	591	Q21.2	제1공심방중격결손(I형)	2019년 추가	회귀
	592	Q21.3	팔로네징후	2019년 추가	회귀
	593	Q21.3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 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2019년 추가	회귀
	594	Q21.4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2019년 추가	회귀
	595	Q21.4	대동맥중격결손	2019년 추가	회귀
	596	Q21.4	대동맥폐동맥창	2019년 추가	회귀
	597	Q21.8	아이젠멘거결손		회귀
	598	Q22.0	폐동맥판폐쇄		회귀
	599	Q22.4	삼첨판폐쇄	2019년 추가	회귀
	600	Q22.5	에브스타인이상	2019년 추가	회귀
	601	Q22.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회귀
	602	Q23.0	대동맥관의 선천협착		회귀
	603	Q23.0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회귀
	604	Q23.0	선천성 대동맥협착		회귀
	605	Q23.1	대동맥관의 선천성 기능부전		회귀
	606	Q23.1	이첨대동맥판막		회귀
	607	Q23.1	선천성 대동맥판폐쇄부전		회귀
	608	Q23.1	선천성 대동맥판역류	2019년 추가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609	Q23.2	선천성 승모관협착		회귀
	610	Q23.2	선천성 승모관폐쇄		회귀
	611	Q23.3	선천성 승모관폐쇄부전		회귀
	612	Q23.4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회귀
	613	Q23.4	(승모관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 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회귀
	614	Q23.8	대동맥관 및 승모관의 기타 선천기형		회귀
	615	Q23.9	대동맥관 및 승모관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회귀
	616	Q24.4	선천성 대동맥협착	2019년 추가	회귀
	617	Q24.5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회귀
	618	Q24.5	선천성 관상동맥류		회귀
	619	Q24.6	선천성 심장차단	2019년 추가	회귀
	620	Q25.1	대동맥의 축착	2019년 추가	회귀
	621	Q25.1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2019년 추가	회귀
	622	Q25.2	대동맥의 폐쇄	2019년 추가	회귀
	623	Q25.3	대동맥의 협착	2019년 추가	회귀
	624	Q25.3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2019년 추가	회귀
	625	Q25.5	폐동맥의 폐쇄		회귀
	626	Q26.0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회귀
	627	Q26.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회귀
	628	Q26.1	좌상대정맥존속		회귀
	629	Q26.2	전폐정맥결합이상		회귀
	630	Q26.3	부분폐정맥결합이상		회귀
	631	Q26.4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회귀
	632	Q26.5	문맥결합이상		회귀
	633	Q26.6	문맥-간동맥루		회귀
	634	Q28.2	와이번메이슨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635	Q38.3	무설증(無舌症)		회귀
	636	Q44.2	담관의 폐쇄		회귀
	637	Q44.7	알라질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638	Q61.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2019년 추가	회귀
	639	Q61.1	다낭성 신장, 영아형	2019년 추가	회귀
	640	Q61.9	메켈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641	Q64.1	방광외반		회귀
	642	Q64.1	방광이소증		회귀
	643	Q64.1	방광외번		회귀
	644	Q74.0	쇄골두개골이골증	2019년 추가	극회귀
	645	Q74.3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2019년 추가	회귀
	646	Q75.0	두개골유합	2019년 추가	회귀
	647	Q75.0	뿔족머리증(Acrocephaly)	2019년 추가	회귀
	648	Q75.0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2019년 추가	회귀
	649	Q75.0	뿔족머리증(Oxycephaly)	2019년 추가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650	Q75.0	삼각머리증	2019년 추가	회귀
	651	Q75.1	두개안면골이골증	2019년 추가	회귀
	652	Q75.1	크루존병		회귀
	653	Q75.4	하악안면골이골증		회귀
	654	Q75.4	프란체스셰티 증후군		회귀
	655	Q75.4	트레치-콜린스 증후군		회귀
	656	Q77.0	연골무발생증		회귀
	657	Q77.0	연골발생저하증		회귀
	658	Q77.1	치사성 단신		회귀
	659	Q77.2	짧은늑골증후군		회귀
	660	Q77.2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회귀
	661	Q77.3	점상 연골형성이상		회귀
	662	Q77.3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2019년 추가	회귀
	663	Q77.3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2019년 추가	회귀
	664	Q77.4	연골무형성증		회귀
	665	Q77.4	연골형성저하증		회귀
	666	Q77.4	선천성 골경화증		회귀
	667	Q77.5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회귀
	668	Q77.6	연골외배엽형성이상		회귀
	669	Q77.6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회귀
	670	Q77.7	척추골단형성이상		회귀
	671	Q77.7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2019년 추가	회귀
	672	Q77.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회귀
	673	Q77.8	말단왜소 형성이상	2019년 추가	회귀
	674	Q77.9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회귀
	675	Q78.0	불완전골형성		회귀
	676	Q78.0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회귀
	677	Q78.0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회귀
	678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회귀
	679	Q78.1	얼브라이트(-맥쿤)(-스틴버그)증후군		회귀
	680	Q78.2	골화석증		회귀
	681	Q78.2	알베르스-윈베르그증후군		회귀
	682	Q78.3	카무라티-엔겔만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683	Q78.4	내연골종증		회귀
	684	Q78.4	마푸치증후군		회귀
	685	Q78.4	올리에르병		회귀
	686	Q78.5	골간단연골형성이상, 슈미드형	2019년 추가	극회귀
	687	Q78.5	필레증후군		회귀
	688	Q78.6	다발선천외골증		회귀
	689	Q78.6	유전성 다발외골증	2019년 추가	회귀
	690	Q78.6	골간병적조직연결		회귀
	691	Q78.9	가성 연골무형성 형성이상	2019년 추가	극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692	Q79.0	선천성 횡격막탈장		회귀
	693	Q79.1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회귀
	694	Q79.1	횡격막결여		회귀
	695	Q79.1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회귀
	696	Q79.1	횡격막 탈출		회귀
	697	Q79.2	배꼽내장탈장		회귀
	698	Q79.2	선천복벽탈장		회귀
	699	Q79.3	복벽과열증		회귀
	700	Q79.4	말린자두배증후군		회귀
	701	Q79.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회귀
	702	Q79.6	엘리스-단로스증후군		회귀
	703	Q79.8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회귀
	704	Q79.8	근육의 결여		회귀
	705	Q79.8	힘줄의 결여		회귀
	706	Q79.8	부근		회귀
	707	Q79.8	선천성 근위축		회귀
	708	Q79.8	선천성 협착띠		회귀
	709	Q79.8	선천성 짧은힘줄		회귀
	710	Q79.8	폴란드증후군		회귀
	711	Q79.9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회귀
	712	Q79.9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회귀
	713	Q79.9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회귀
	714	Q80.2	층판비늘증	2019년 추가	극회귀
	715	Q80.3	선천성 수포성 비늘모양홍색피부증	2019년 추가	극회귀
	716	Q81.0	단순 수포성 표피박리증	2019년 추가	극회귀
	717	Q81.1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회귀
	718	Q81.1	헤틀리츠증후군		회귀
	719	Q81.2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회귀
	720	Q82.3	색소실조증	2019년 추가	극회귀
	721	Q82.4	(무한성) 외배엽형성이상	2019년 추가	극회귀
	722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회귀
	723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2019년 추가	회귀
	724	Q85.0	폰렉클링하우젠병		회귀
	725	Q85.1	결절성 경화증		회귀
	726	Q85.1	부르느뷰병		회귀
	727	Q85.1	에필로이아		회귀
	728	Q85.8	포이즈-제거스 증후군		회귀
	729	Q85.8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회귀
	730	Q85.8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회귀
	731	Q86.0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회귀
	732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회귀
	733	Q87.0	침두다자유합증		회귀
	734	Q87.0	침두유합지증		회귀
	735	Q87.0	잠복안구증후군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736	Q87.0	단안증		회귀
	737	Q87.0	골덴하 증후군		회귀
	738	Q87.0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39	Q87.0	피비우스 증후군		회귀
	740	Q87.0	입-얼굴-손발 증후군		회귀
	741	Q87.0	로빈 증후군		회귀
	742	Q87.0	회과랍부는 얼굴		회귀
	743	Q87.0	카펜터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44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회귀
	745	Q87.1	아르스코그 증후군		회귀
	746	Q87.1	코케인 증후군		회귀
	747	Q87.1	드 랑즈 증후군		회귀
	748	Q87.1	두보위츠 증후군		회귀
	749	Q87.1	누난 증후군		회귀
	750	Q87.1	프라더-윌리 증후군		회귀
	751	Q87.1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회귀
	752	Q87.1	러셀-실버 증후군		회귀
	753	Q87.1	시클 증후군		회귀
	754	Q87.1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회귀
	755	Q87.1	셰그렌-라손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56	Q87.2	홀트-오람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57	Q87.2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58	Q87.2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59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회귀
	760	Q87.2	바테르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1	Q87.3	베크위트-비데만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회귀
	762	Q87.3	소토스 증후군		회귀
	763	Q87.3	위버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4	Q87.4	마르팡증후군		회귀
	765	Q87.8	알포트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6	Q87.8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7	Q87.8	젤웨거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8	Q87.8	촘지 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769	Q90.0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회귀
	770	Q90.1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회귀
	771	Q90.2	21삼염색체증, 전위		회귀
	772	Q90.9	21삼염색체증 NOS		회귀
	773	Q91.0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회귀
	774	Q91.1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회귀
	775	Q91.2	18삼염색체증, 전위		회귀
	776	Q91.4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회귀
	777	Q91.5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회귀
	778	Q91.6	13삼염색체증, 전위		회귀
	779	Q91.7	13삼염색체증후군	2019년 추가	회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780	Q92.2	10단완삼염색체증	2019년 추가	극희귀
	781	Q93.3	윌프-허쉬호른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782	Q93.4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희귀
	783	Q93.4	고양이울음증후군		희귀
	784	Q93.5	엔젤만증후군		희귀
	785	Q93.5	캐취22증후군		희귀
	786	Q93.5	18장완단일염색체증	2019년 추가	극희귀
	787	Q93.5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788	Q93.5	윌리엄스 증후군	2019년 추가	희귀
	789	Q96.0	핵형45, X		희귀
	790	Q96.1	핵형46, X동인자(Xq)		희귀
	791	Q96.2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희귀
	792	Q96.3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희귀
	793	Q96.4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희귀
	794	Q98.0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희귀
	795	Q98.1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희귀
	796	Q98.2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희귀
	797	Q99.2	취약X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798	코드없음	알스트롬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799	코드없음	ARC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00	코드없음	Cowden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01	코드없음	Dent 질환	2019년 추가	극희귀
	802	코드없음	GLUT1 결핍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03	코드없음	KID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04	코드없음	가부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05	코드없음	고함-스타우트 병	2019년 추가	극희귀
	806	코드없음	굴지 형성이상	2019년 추가	극희귀
	807	코드없음	다발성 골단 형성이상	2019년 추가	극희귀
	808	코드없음	데니스-드래쉬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09	코드없음	두개골간단형성부전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10	코드없음	라스무센 뇌염	2019년 추가	극희귀
	811	코드없음	랑거 기드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12	코드없음	밀러-디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13	코드없음	선천성 무거핵구성 혈소판감소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14	코드없음	알렉산더 병	2019년 추가	극희귀
	815	코드없음	앤티리-빅슬러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16	코드없음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17	코드없음	에드하임-체스터 병	2019년 추가	극희귀
	818	코드없음	장림프관확장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19	코드없음	주버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0	코드없음	지텔만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821	코드없음	카나반 병	2019년 추가	극희귀
	822	코드없음	카다실	2019년 추가	극희귀
	823	코드없음	큐라리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4	코드없음	크론카이드-카나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5	코드없음	터프팅장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26	코드없음	페리-롬버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7	코드없음	프레이저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8	코드없음	헤이-웰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29	코드없음	알란-헌든-더들리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0	코드없음	펠리스터-킬리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1	코드없음	코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2	코드없음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33	코드없음	슈바크만-다이아몬드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4	코드없음	Adult-onset leukoencephalopathy with axonal spheroids and pigmented glia (ALSP)	2019년 추가	극희귀
	835	코드없음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36	코드없음	철불응성 철결핍성 빈혈	2019년 추가	극희귀
	837	코드없음	하다드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8	코드없음	피어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39	코드없음	3MC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0	코드없음	위커-워버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1	코드없음	코핀-시리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2	코드없음	소아성 교대성 편마비	2019년 추가	극희귀
	843	코드없음	윈젤 기드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4	코드없음	모왓-윌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5	코드없음	선천성 중추성 무호흡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46	코드없음	1단완36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47	코드없음	아동기 저수초형성 운동실조	2019년 추가	극희귀
	848	코드없음	근긴장이상을 동반한 고망간혈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49	코드없음	2장완11 미세중복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0	코드없음	10장완 말단 삼염색체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1	코드없음	15장완11.2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2	코드없음	골드버그 쉬프린첸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3	코드없음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4	코드없음	카라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5	코드없음	선천성 단장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6	코드없음	COL4A1 관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7	코드없음	DYRK1A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8	코드없음	KBG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59	코드없음	Kleefstra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0	코드없음	PelizaeusMerzbacher 병	2019년 추가	극희귀
	861	코드없음	SOPH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2	코드없음	가족성 칸디다증 2	2019년 추가	극희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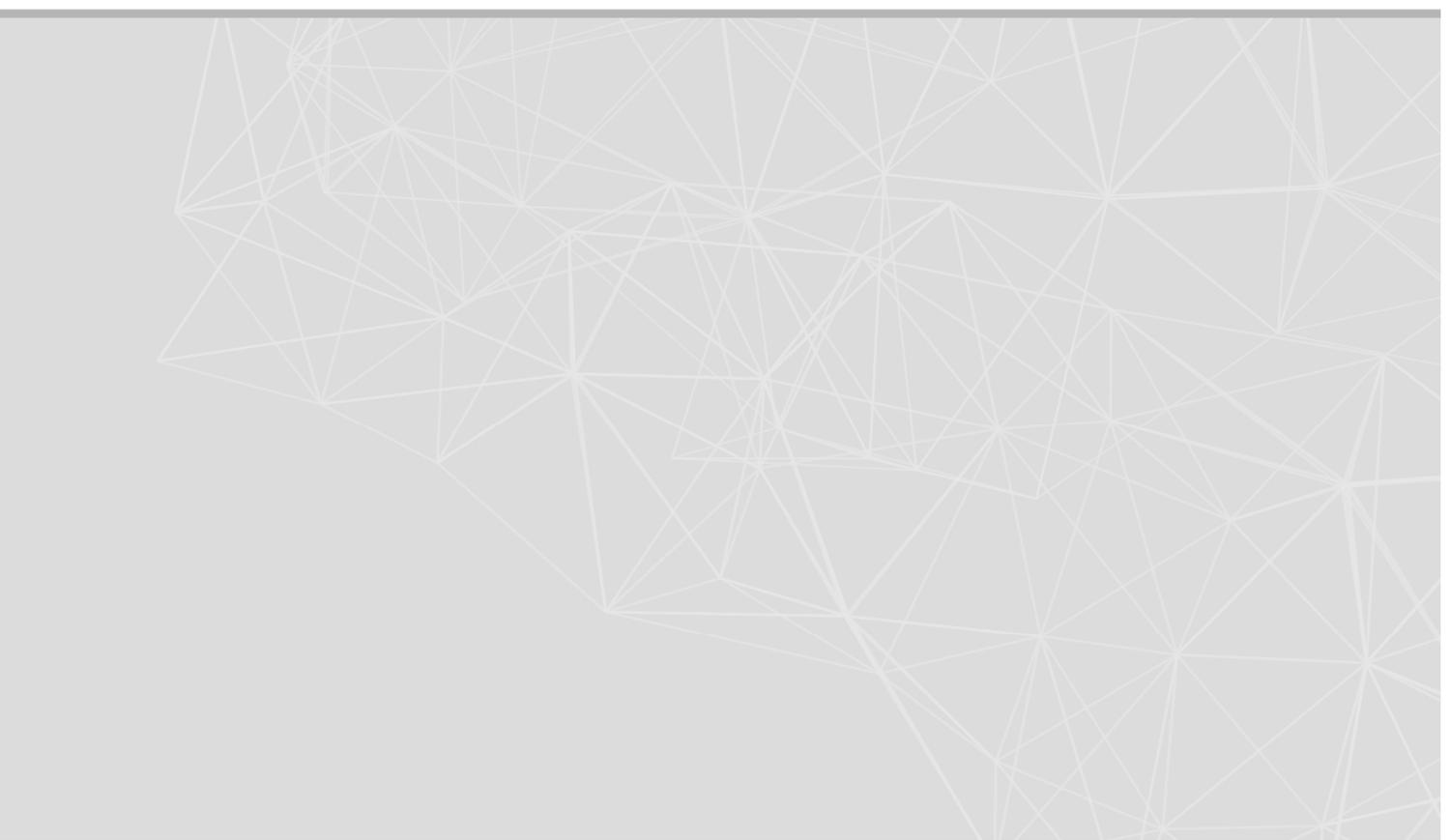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863	코드없음	골린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4	코드없음	골츠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5	코드없음	랍슨 멘덴홀 증후군, 레프리코니즘	2019년 추가	극희귀
	866	코드없음	레버 유전시신경병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67	코드없음	로이에-디에즈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8	코드없음	로하드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69	코드없음	메이어-골린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0	코드없음	무홍채 소뇌성운동실조 정신박약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71	코드없음	버트-호그-두베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2	코드없음	볼프람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3	코드없음	봉입체 근염	2019년 추가	극희귀
	874	코드없음	아이팩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5	코드없음	젤레오피지 골이형성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76	코드없음	코핀-로우리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7	코드없음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발열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78	코드없음	특발성 폐 혈색소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79	코드없음	페림프관종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80	코드없음	포토키 룽스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1	코드없음	플로우팅 하버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2	코드없음	피트 홉킨스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3	코드없음	하주-체니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4	코드없음	Vici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5	코드없음	가족성(유전성) 채장염	2019년 추가	극희귀
	886	코드없음	선천 간섭유증	2019년 추가	극희귀
	887	코드없음	선천 염소 설사 (만성염소설사)	2019년 추가	극희귀
	888	코드없음	선천성 지카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89	코드없음	돌발운동유발 이상운동	2019년 추가	극희귀
	890	코드없음	발작성 운동실조증 2형	2019년 추가	극희귀
	891	코드없음	안와 림프관종	2019년 추가	극희귀
	892	코드없음	만성 진행성 외안근마비	2019년 추가	극희귀
	893	코드없음	11단완13 결실 (WAGR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94	코드없음	11장완 결실 증후군 (아콕센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95	코드없음	8장완13 미세결실증후군 (Mesomelia-synostoses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96	코드없음	8장완24.1 결실 (랑거-기드온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97	코드없음	엠마누엘 증후군	2019년 추가	극희귀
	898	코드없음	1장완21.1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899	코드없음	2장완24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00	코드없음	2장완32-33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01	코드없음	2장완33.1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02	코드없음	3번 염색체 단완 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903	코드없음	3번 염색체 장완 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904	코드없음	3장완29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05	코드없음	4번 염색체 단완부분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906	코드없음	4장완21 미세결실	2019년 추가	염색체
	907	코드없음	4장완34 미세결실	2019년 추가	염색체
	908	코드없음	7장완11.23 미세중복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09	코드없음	재조합 8번 염색체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10	코드없음	8단완단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11	코드없음	8단완11.2 미세결실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12	코드없음	8장완21.11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13	코드없음	8장완22.1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14	코드없음	9번 염색체 단완 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915	코드없음	9단완사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16	코드없음	10장완 말단부 단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17	코드없음	10장완22-23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18	코드없음	11장완 말단부 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19	코드없음	14장완 말단부 단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20	코드없음	15장완사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21	코드없음	16번 염색체 단완 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922	코드없음	16단완11-12 미세결실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923	코드없음	18번 환염색체	2019년 추가	염색체
	924	코드없음	18번 염색체 단완 결손	2019년 추가	염색체
	925	코드없음	20장완 말단부 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26	코드없음	20단완삼염색체증	2019년 추가	염색체
	927	코드없음	Xq28 중복 증후군	2019년 추가	염색체
<b>2</b>	<b>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대상질환</b>				
	1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중증난치
	2	G20	파킨슨병	지체장애 3급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만 지원가능	중증난치
	3	G20	편측파킨슨증		
	4	G20	떨림마비		
	5	G20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6	G20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7	G20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8	H35.31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9	K51.0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중증난치
	10	K51.2	궤양성 (만성) 직장염		중증난치
	11	K51.5	좌측 결장염		중증난치
	12	K51.8	기타 궤양성 대장염		중증난치
	13	K51.9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중증난치
	14	M45.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중증난치
	15	M45.1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중증난치
	16	M45.2	강직척추염, 경부		중증난치
	17	M45.3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중증난치
	18	M45.4	강직척추염, 흉추부		중증난치
	19	M45.5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중증난치
	20	M45.6	강직척추염, 요추부		중증난치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산정특례 종류
	21	M45.7	강직척추염, 요천부		중증난치
	22	M45.8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중증난치
	23	N18	만성 신장병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에 한함	중증난치
	24	P22.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중증난치

붙임 2

한시적 지원 대상질환



&lt;붙임 2&gt;

## □ 한시적 지원 대상질환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3	타 희귀질환 수렴 신규신청불가, 기존 대상자에 한함 (‘19.12.31까지 한시적 지원 후 지원종료) ※의료비지원 가능 질환으로 이동시 계속지원가능		
	1	D56	지중해빈혈
	2	D56.8	기타 지중해빈혈
	3	D56.9	상세불명의 지중해빈혈
	4	D56.9	지중해빈혈(기타 헤모글로빈병증을 동반한)
	5	D56.9	지중해빈혈(경증형, 혼합형, 기타 헤모글로빈병증을 동반한)
	6	D60.8	기타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7	D60.9	상세불명의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8	D61.2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무형성빈혈
	9	D61.8	기타 명시된 무형성빈혈
	10	D61.9	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
	11	D69.6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12	D76.3	기타 조직구증후군
	13	D76.3	황색육아종
	14	D80	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
	15	D80.9	상세불명의 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
	16	D81	복합면역결핍
	17	D81.8	기타 복합면역결핍
	18	D81.9	상세불명의 복합면역결핍
	19	D82	기타 주요 결손과 관련된 면역결핍
	20	D82.8	기타 명시된 주요결손과 관련된 면역결핍
	21	D82.9	상세불명의 주요결손과 관련된 면역결핍
	22	D83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23	D83.8	기타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24	D83.9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25	D84	기타 면역결핍
	26	D84.8	기타 명시된 면역결핍
	27	D84.9	상세불명의 면역결핍
	28	D86	사르코이드증
	29	D86.9	상세불명의 사르코이드증
	30	E25	부신생식기장애
	31	E25.8	기타 부신생식기장애
	32	E25.9	상세불명의 부신생식기장애
	33	E27.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신피질부전
	34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35	E70	방향족아미노산대사장애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36	E70.2	고타이로신혈증
	37	E70.3	백색증
	38	E70.8	방향족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39	E70.9	방향족아미노산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40	E71	측쇄아미노산 및 지방산 대사장애
	41	E71.1	측쇄아미노산대사의 기타 장애
	42	E71.2	측쇄아미노산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43	E72	아미노산대사의 기타 장애
	44	E72.8	아미노산대사의 기타 명시된 장애
	45	E72.9	아미노산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46	E73	젓당불내성
	47	E73.8	기타 젓당불내성
	48	E73.9	상세불명의 젓당불내성
	49	E74	탄수화물대사의 기타 장애
	50	E74.8	탄수화물대사의 기타 명시된 장애
	51	E74.8	옥살산증
	52	E74.9	탄수화물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53	E75.1	기타 강글리오시드증
	54	E75.2	기타 스펅고리피드증
	55	E75.5	기타 지질축적장애
	56	E76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57	E76.2	기타 점액다당류증
	58	E76.3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59	E76.8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기타 장애
	60	E76.9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61	E77	당단백질대사장애
	62	E77.8	당단백질대사의 기타 장애
	63	E77.9	당단백질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64	E80.2	기타 포르피린증
	65	E84	낭성섬유증
	66	E84.8	기타 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67	E84.9	상세불명의 낭성 섬유증
	68	E85	아밀로이드증
	69	E85.8	기타 아밀로이드증
	70	E85.9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71	G11	유전성 운동실조
	72	G1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73	G12.20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74	G12.21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75	G12.22	원발성 측삭경화증
	76	G12.23	진행성 연수마비
	77	G12.24	진행성 근위축
	78	G12.25	X-연관척수연수근위축
	79	G12.27	기타 유전성 운동신경세포병
			연번, 73~79번은 G12.2 운동신경세포병으로 신규등록 가능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80	G40.40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레녹스-가스토증후군
	81	G40.4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82	G56.4	작열통
	연번, 80~81번은 G40.4 레녹스-가스토증후군으로 신규등록 가능		
	83	G61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84	G61.0	급성 감염(후) 다발신경염
	85	G61.1	혈청신경병증
	86	G61.8	기타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87	G61.9	상세불명의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88	G71	근육의 원발성 장애
	89	G71.8	근육의 기타 원발성 장애
	90	G71.9	근육의 상세불명의 원발성 장애
	91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92	K50	크론병[국소성장염]
	93	K50.0	십이지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94	K50.0	회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95	K50.0	공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96	K50.0	국소성 회장염
	97	K50.0	종말 회장염
	98	K50.1	육아종성 결장염
	99	K50.1	국소성 결장염
	100	K50.1	결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101	K50.1	대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102	K50.1	직장의 크론병[국소성장염]
	103	K50.8	기타크론병
	104	K50.9	상세불명의 크론병
	105	K50.9	크론병 NOS
	106	K50.9	국소성 장염 NOS
	107	K51	궤양성 대장염
	108	K74.3	만성 비화농성 파괴성 담관염
	109	M08.2	스틸병 NOS
	110	M30.1	알러지성 육아종성 혈관염
	111	M32.10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112	M32.10	리브만-샤스병(I39.0*)
	113	M32.10	심장낭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2.8*)
	114	M32.12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115	M32.13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116	M32.13	세노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117	M32.15	기타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 전신홍반루푸스
	118	M32.15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119	M32.15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120	M32.15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121	M32.19	상세불명의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연번, 111~121번은 M32.1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로 신규등록 가능		
	122	M32.8	기타 형태의 전신홍반루푸스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123	M32.9	상세불명의 전신흡반루푸스
	124	M33	피부다발근염
	125	M33.9	상세불명의 피부다발근염
	126	M34.8	기타 형태의 전신경화증
	127	M34.9	상세불명의 전신경화증
	128	M35.1	기타 중복증후군
	129	M45	강직척추염
	130	M45	척추의 류마티스관절염
	131	M88	뼈의 파궤병[변형성골염]
	132	M89.0	통증신경디스트로피
	133	M89.0	어깨-손증후군
	134	M89.0	수대크위축
	135	M89.0	교감신경반사디스트로피
	136	Q05	이분척추
	137	Q23	대동맥판막승모판의선천기형
	138	Q77	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
	139	Q79	달리분류되지않은근골격계통의선천기형
	140	Q90	다운증후군
	141	Q90.9	상세불명의다운증후군
	142	Q91	에드워즈증후군및파타우증후군
	143	Q91.3	상세불명의에드워즈증후군
	144	Q91.7	상세불명의파타우증후군
	145	Q96	터너증후군
	146	Q96.8	터너증후군의기타변형
	147	Q96.9	상세불명의터너증후군
	148	Q98.4	상세불명의클라인펠터증후군
4	<b>산정특례 적용 제외</b>		
	<b>신규신청불가, 기존 대상자에 한함</b>		
	<b>(‘19.12.31 까지 한시적 지원 후 지원 종료)</b>		
	1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2	A81.1	도슨 봉입체뇌염
	3	A81.1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4	A81.1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5	A81.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6	A81.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7	A81.8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8	A81.8	쿠루
	9	A81.9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10	A81.9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11	B45	크립토콕쿠스증
	12	B45.0	폐크립토콕쿠스증
	13	B45.1	대뇌크립토콕쿠스증
14	B45.1	크립토콕쿠스수막대뇌염	
15	B45.1	크립토콕쿠스수막염(G02.1*)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16	B45.2	피부크립토크쿠스증
	17	B45.3	골크립토크쿠스증
	18	B45.7	전신크립토크쿠스증
	19	B45.7	파종성 크립토크쿠스증
	20	B45.8	기타 형태의 크립토크쿠스증
	21	B45.9	상세불명의 크립토크쿠스증
	22	C96.5	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23	C96.5	조직구증 X, 다초점
	24	C96.5	핸드-שללר-크리스찬병
	25	C96.6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26	C96.6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NOS
	27	C96.6	조직구증 X NOS
	28	C96.6	조직구증 X, 단초점
	29	C96.6	호산구육아증
	30	D60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31	D60.1	일과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32	D70	독성 호중구감소
	33	D70	비장성(원발성)호중구감소
	34	D80.7	영아기의 일과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35	E25.8	특발성 부신생식기장애
	36	E73.1	이차성 젓당분해효소결핍
	37	E74.1	과당-1,6-이인산분해효소결핍
	38	E74.1	과당대사장애
	39	E74.1	본태성과당뇨
	40	E74.1	유전성과당불내성
	41	E74.3	수크레이스결핍
	42	E74.3	장성탄수화물흡수의기타장애
	43	E74.3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44	E74.8	본태성펜토스뇨
	45	E74.8	신장성당뇨
	46	E85.3	이차성 전신아밀로이드증
	47	E85.3	혈액투석-연관아밀로이드증
	48	G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49	G13.0	감각성 중앙말림신경병증[데니브라운](C000D48+)
	50	G13.0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51	G13.0	암종성 신경근육병증
	52	G13.1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0D48+)
	53	G13.1	신생물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기타 계통성 위축
	54	G13.2	점액부종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성 위축(E00.1+,E03.0+)
	55	G13.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56	G41	뇌전증지속상태
	57	G63.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
	58	G63.0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
	59	G63.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60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1	G63.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2	G63.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3	G63.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4	G63.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5	G63.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6	G63.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7	G70.1	독성근신경장애
	68	G71.1	약물유발근긴장증
	69	I42.0	울혈성 심근병증
	70	I42.2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71	I42.5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72	I42.5	협착성 심근병증 NOS
	73	K51.3	궤양성 (만성) 직장구불결장염
	74	K51.4	염증성 폴립
	75	M07.20	건선척추염(L40.5+),여러부위
	76	M07.28	건선척추염(L40.5+),기타부분
	77	M31.0	과민성 혈관염
	78	M35.7	가족성 인대이완
	79	M35.7	과가동성 증후군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http://kostat.go.kr/>, 통계분류) 기준에 따름

적용방법 : 상병코드가 A31.9(4자리인 경우) → A31.9에만 적용

상병코드가 D71(3자리인 경우) →D71.0~D71.9까지 모두 적용

\* NOS :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의 약어이며, 실제적으로 “상세불명의 것” 및 “성격미상의 것”과 동일함

붙임 3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붙임 3>

##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1	<b>보장구 구입비</b>			
	1	E71.3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2	E74.0	글리코젠축적병	
	3	E74.0	심장글리코젠증	
	4	E74.0	안데르센병	
	5	E74.0	코리병	
	6	E74.0	포르브스병	
	7	E74.0	허스병	
	8	E74.0	맥아들병	
	9	E74.0	폼페병	
	10	E74.0	타루이병	
	11	E74.0	폰기에르케병	
	12	E74.0	간인산화효소결핍	
	13	E76.0	I형 점액다당류증	
	14	E76.0	헨터증후군	
	15	E76.0	헨러-샤이에증후군	
	16	E76.0	샤이에증후군	
	17	E76.1	II형 점액다당류증	
	18	E76.1	헌터증후군	
	19	E76.2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20	E76.2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21	E76.2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22	E76.2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23	E76.2	산필리포 (B형)(C형)(D형) 증후군	
	24	G11.0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25	G11.1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26	G11.1	본태성 델립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27	G11.1	마이오클로누스[헌터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28	G11.1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29	G11.1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30	G11.1	X-연관 열성 척주소뇌성 운동실조	
	31	G11.2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32	G11.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33	G11.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34	G11.4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35	G11.8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36	G11.9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37	G11.9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38	G11.9	유전성 소뇌의 변성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39	G11.9	유전성 소녀의 병	
	40	G11.9	유전성 소녀의 증후군	
	41	G12.0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42	G12.1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43	G12.1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44	G12.1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45	G12.1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46	G12.1	원위 척수성 근위축	
	47	G12.1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48	G12.1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49	G12.2	운동신경세포병	
	50	G12.8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51	G12.9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52	G35	다발경화증	
	53	G35	다발경화증 NOS	
	54	G35	뇌간(~의) 다발경화증	
	55	G35	척수(~의) 다발경화증	
	56	G35	과종성(~의) 다발경화증	
	57	G35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58	G60.0	샤르코-마리-투스질환	
	59	G61.0	길랭-바레증후군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가능)
	60	G71.0	근디스트로피	
	61	G71.0	뒤셴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 디스트로피	
	62	G71.0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63	G71.0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64	G71.0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65	G71.0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66	G71.0	지대 근디스트로피	
	67	G71.0	눈 근디스트로피	
	68	G71.0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69	G71.0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70	G71.0	중증[뒤췌] 근디스트로피	
	71	G71.1	근긴장장애	
	72	G71.1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73	G71.1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74	G71.1	증상성 근긴장증	
	75	G71.1	선천성 근긴장증 NOS	
	76	G71.1	우성[토크슨] 선천성 근긴장증	
	77	G71.1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78	G71.1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79	G71.1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80	G71.1	거짓근긴장증	
	81	G71.2	선천성 근병증	
	82	G7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83	G7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84	G71.2	중심핵 병	
	85	G71.2	미세심 병	
	86	G71.2	다발심 병	
	87	G71.2	근섬유형 불균형	
	88	G7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89	G71.2	네말린근병증	
	90	G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91	G71.9	유전성 근병증 NOS	
2	<b>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b>			
	1	A81.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2	E71.3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3	E74.0	글리코젠축적병	
	4	E74.0	심장글리코젠증	
	5	E74.0	안데르센병	
	6	E74.0	코리병	
	7	E74.0	포르브스병	
	8	E74.0	허스병	
	9	E74.0	맥아들병	
	10	E74.0	폼페병	
	11	E74.0	타투이병	
	12	E74.0	폰기에르케병	
	13	E74.0	간인산화효소결핍	
	14	E76.0	I형 점액다당류증	
	15	E76.0	혈러증후군	
	16	E76.0	혈러-샤이에증후군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17	E76.0	샤이에증후군	
	18	E76.1	II형 점액다당류증	
	19	E76.1	헌터증후군	
	20	E76.2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21	E76.2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22	E76.2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23	E76.2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24	E76.2	산필리포 (B형)(C형)(D형) 증후군	
	25	G11.0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26	G11.1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27	G11.1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28	G11.1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29	G11.1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30	G11.1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31	G11.1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32	G11.2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33	G11.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34	G11.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35	G11.4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36	G11.8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37	G11.9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38	G11.9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39	G11.9	유전성 소뇌의 변성	
	40	G11.9	유전성 소뇌의 병	
	41	G11.9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42	G12.0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43	G12.1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44	G12.1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45	G12.1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46	G12.1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47	G12.1	원위 척수성 근위축	
	48	G12.1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49	G12.1	어깨중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50	G12.2	운동신경세포병	
	51	G12.8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52	G12.9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53	G35	다발경화증	
	54	G35	다발경화증 NOS	
	55	G35	뇌간(~의) 다발경화증	
	56	G35	척수(~의) 다발경화증	
	57	G35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58	G35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추가 지원가능
	59	G60.0	샤르코-마리-투스질환	
	60	G61.0	길랭-바레증후군	
	61	G70.0	중증근무력증	
	62	G71.0	근디스트로피	
	63	G71.0	뒤쉰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64	G71.0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65	G71.0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66	G71.0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67	G71.0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68	G71.0	지대 근디스트로피	
	69	G71.0	눈 근디스트로피	
	70	G71.0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71	G71.0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72	G71.0	중증[뒤쉰] 근디스트로피	
	73	G71.1	근긴장장애	
	74	G71.1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75	G71.1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76	G71.1	중상성 근긴장증	
	77	G71.1	선천성 근긴장증 NOS	
	78	G71.1	우성[툽슨] 선천성 근긴장증	
	79	G71.1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80	G71.1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81	G71.1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82	G71.1	거짓근긴장증	
	83	G71.2	선천성 근병증	
	84	G7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85	G7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86	G71.2	중심핵 병	
	87	G71.2	미세심 병	
	88	G71.2	다발심 병	
	89	G71.2	근섬유형 불균형	
	90	G7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91	G71.2	네말린근병증	
	92	G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93	G71.9	유전성 근병증 NOS	
	94	J84.18	특발성 폐섬유증	
3	간병비 대상질환			
	1	A81.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호흡보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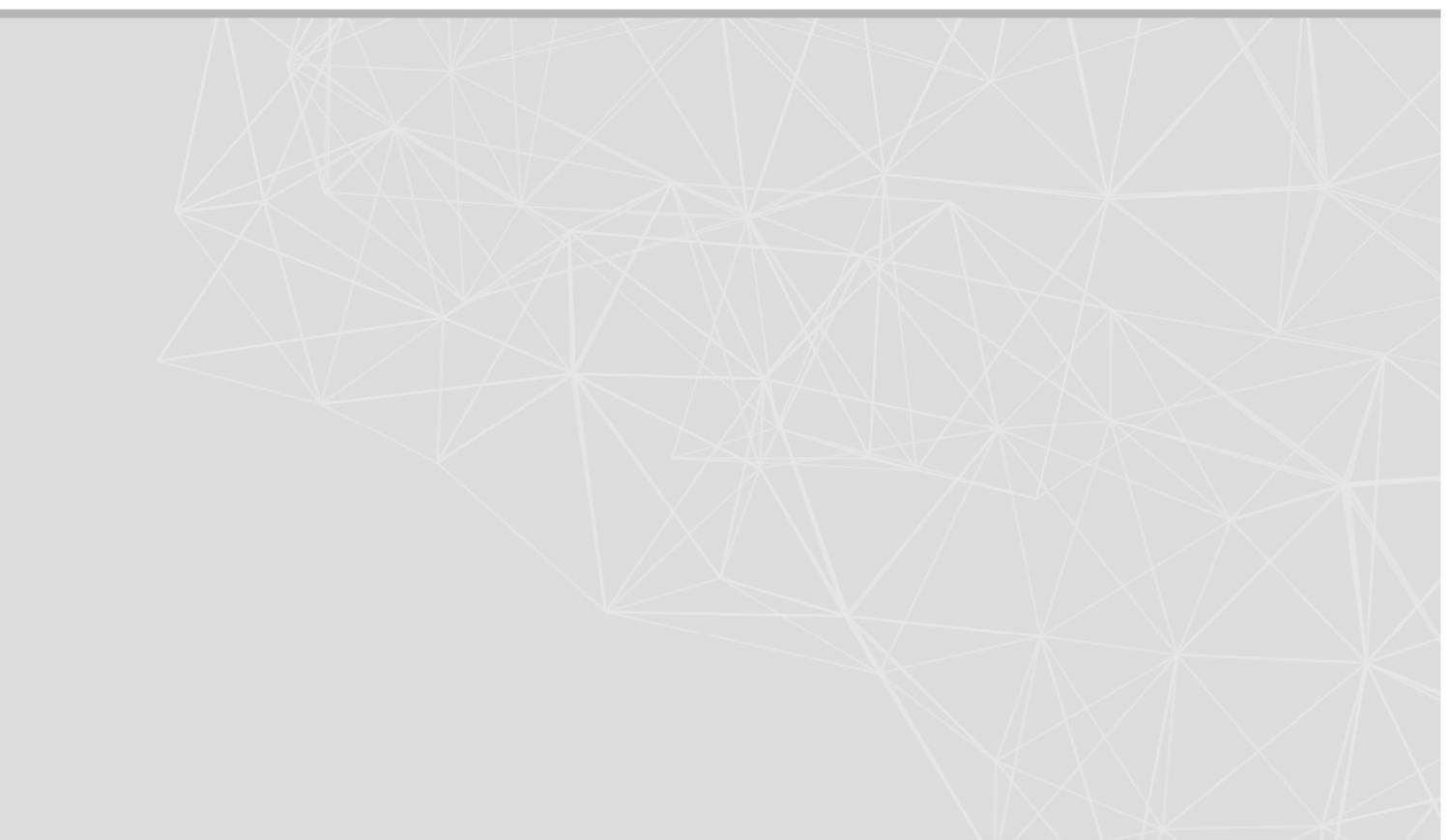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기침유발기 추가 지원가능
	2	E71.3	지방산대사장애	
	3	E71.3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4	E74.0	글리코젠축적병	
	5	E74.0	심장글리코젠증	
	6	E74.0	안데르센병	
	7	E74.0	코리병	보장구 구입비.
	8	E74.0	포르브스병	호흡보조기,
	9	E74.0	허스병	기침유발기
	10	E74.0	맥아들병	추가 지원가능
	11	E74.0	폼페병	
	12	E74.0	타루이병	
	13	E74.0	폰기에르케병	
	14	E74.0	간인산화효소결핍	
	15	E75.2	크라베병	
	16	E76.0	I형 점액다당류증	
	17	E76.0	혈러증후군	
	18	E76.0	혈러-샤이에증후군	
	19	E76.0	샤이에증후군	보장구 구입비.
	20	E76.1	II형 점액다당류증	호흡보조기,
	21	E76.1	헌터증후군	기침유발기
	22	E76.2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추가 지원가능
	23	E76.2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24	E76.2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25	E76.2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26	E76.2	산필리포 (B형)(C형)(D형) 증후군	
	27	F84.2	레트증후군	
	28	G11.0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29	G11.1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30	G11.1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31	G11.1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 병 소뇌성 운동실조	
	32	G11.1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 조	보장구 구입비.
	33	G11.1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호흡보조기,
	34	G11.1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기침유발기
	35	G11.2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추가 지원가능
	36	G11.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37	G11.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38	G11.4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39	G11.8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40	G11.9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41	G11.9	유전성 소녀의 운동실조 NOS	
	42	G11.9	유전성 소녀의 변성	
	43	G11.9	유전성 소녀의 병	
	44	G11.9	유전성 소녀의 증후군	
	45	G12.0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46	G12.1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47	G12.1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48	G12.1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49	G12.1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50	G12.1	원위 척수성 근위축	
	51	G12.1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52	G12.1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53	G12.2	운동신경세포병	
	54	G12.8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55	G12.9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56	G35	다발경화증	
	57	G35	다발경화증 NOS	
	58	G35	뇌간(~의) 다발경화증	
	59	G35	척수(~의) 다발경화증	
	60	G35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61	G35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62	G60.0	샤르코-마리-투스질환	
	63	G61.0	길랭-바레증후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추가 지원가능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에 한하여 간병비 지원가능)
	64	G71.0	근디스트로피	
	65	G71.0	뒤센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66	G71.0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67	G71.0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68	G71.0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69	G71.0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70	G71.0	지대 근디스트로피	
	71	G71.0	눈 근디스트로피	
	72	G71.0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73	G71.0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추가 지원가능

구분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비고
	74	G71.0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75	G71.1	근긴장장애	
	76	G71.1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77	G71.1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78	G71.1	증상성 근긴장증	
	79	G71.1	선천성 근긴장증 NOS	
	80	G71.1	우성[툼슨] 선천성 근긴장증	
	81	G71.1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82	G71.1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83	G71.1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84	G71.1	거짓근긴장증	
	85	G71.2	선천성 근병증	
	86	G7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87	G7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88	G71.2	중심핵 병	
	89	G71.2	미세섬 병	
	90	G71.2	다발섬 병	
	91	G71.2	근섬유형 불균형	
	92	G7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93	G71.2	네말린근병증	
94	G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95	G71.9	유전성 근병증 NOS		
4	<b>특수식이 구입비 대상질환</b>			
	1	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2	E71.0	단풍시럽노병	
	3	E71.1	메틸말론산혈증	
	4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5	E71.1	프로피온산혈증	
	6	E72.1	호모시스틴뇨	
	7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붙임 4

보장구 지원액 관련 시행규칙



&lt;붙임 4&gt;

## 보장구 지원액 관련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7] <개정 2018.12.31.>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1. 일반원칙

-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 나. 가목의 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 마.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 바.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장구의 기준액(제2호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 자. 제2호에 따른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 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

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머리 및 목 지지대
-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3) 다리 및 발 지지대

파.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 2)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 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 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 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 s h o r 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 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 s t a n d a r 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 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 지 ( e l b o 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 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 지 ( s h o r 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 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 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 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 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 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6)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 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 반 보 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 리 보 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 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 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 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 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 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 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 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 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 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 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 기 - 관절운동 제한장 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 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 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 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 용		16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을 위한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립, 업라이트, 장판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	일반형	480,000	5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밖 의 보장구		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 라이 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20,000	2
	3) 목발 (crutches)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1,670,000	6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있는 경우 사용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 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 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 대 및 랩트 레이( lap tray)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 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베이스	1,700,000 800,000	5 5
	18) 보행보조차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 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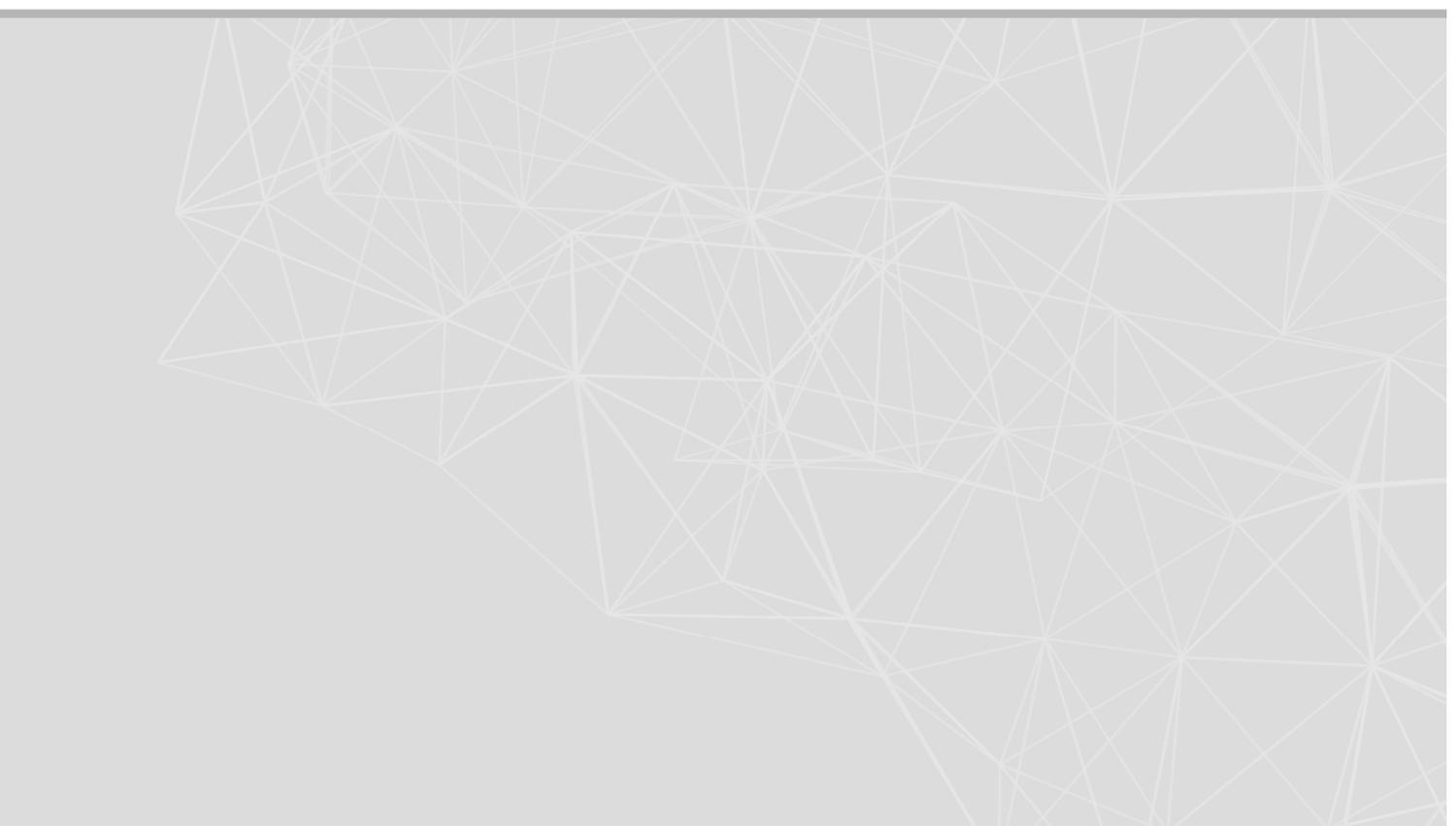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4. 그 밖의 사항

- 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 나. 보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붙임 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 I.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소관 비영리 법인

법인격	명 칭	주 소	연락처/홈페이지
사단 법인	루프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운니동, 가든타워 18층 1801호)	02)2285-4546 www.luisa.or.kr
재단 법인	승일희망재단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902호 (유니온센터)	02-3453-6865 www.sihope.or.kr
재단 법인	인터알리아공익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57, 3층 (방배동, 대흥빌딩A)	02-3486-9131 https://blog.naver.com/interfund
사단 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0-27 현대싱그런 지하 102호	02)714-5522 www.kord.or.kr
재단 법인	한국희귀질환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길 21 103동 407호(서초동, 더샵서초)	02-523-9230 www.kfrd.org
재단 법인	행복한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제6층 제606호	02-784-9936 www.hplus.or.kr

### II. 지원대상 질환 관련 비법인 환자·보호자 자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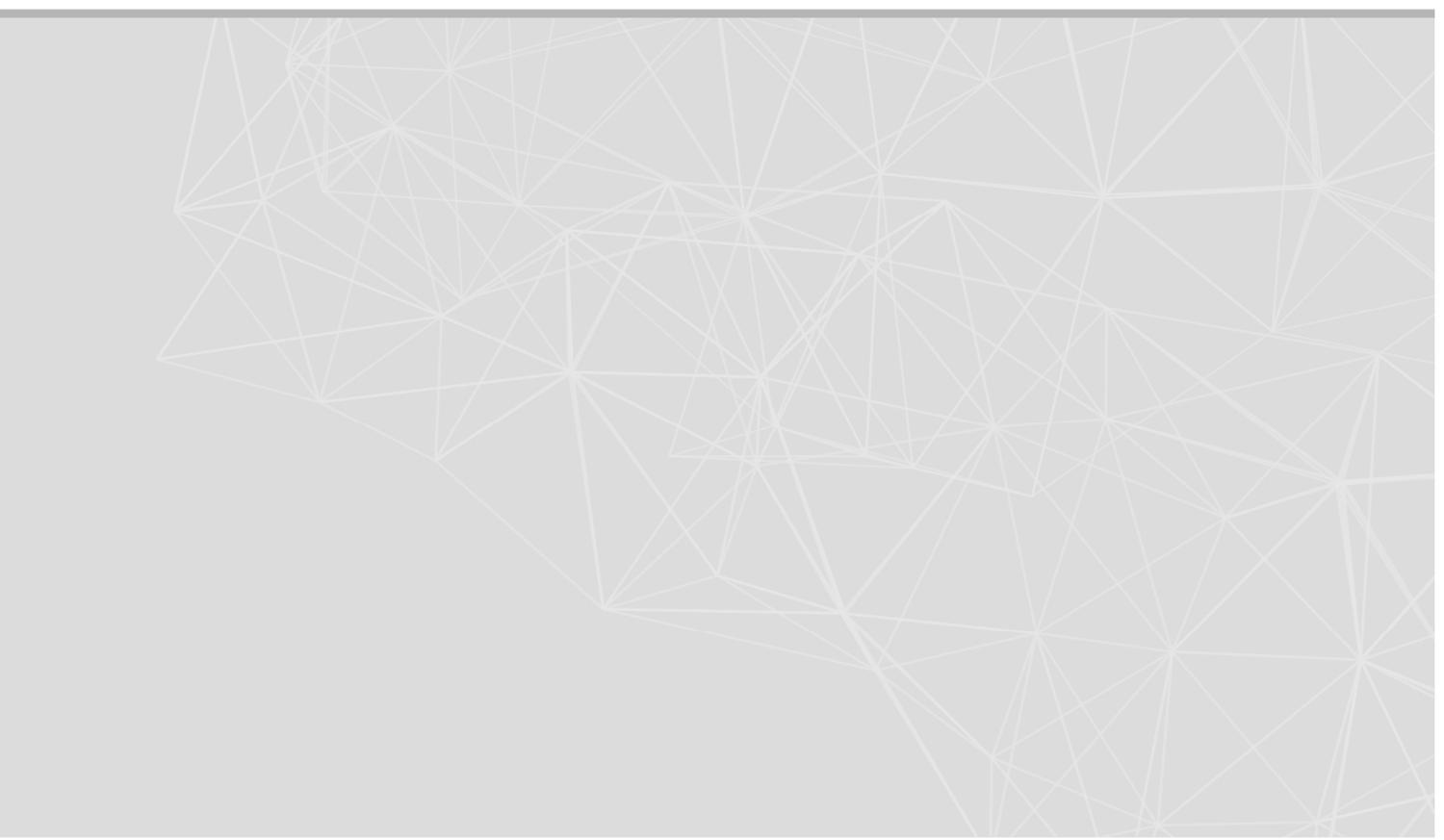
단체명	홈페이지주소
헌팅턴병 환우회	http://www.huntington.co.kr
한국염증성질환협의회 (KIBDO)	http://www.kibdo.org/
돌발운동유발이상운동 환우회	http://www.pkd.or.kr/
아벨리노 극복하기	http://cafe.naver.com/avellino.cafe
PKD/PKC (돌발운동유발 이상운동) 환우 모임	http://cafe.daum.net/md77777
폐섬유화증, 특발성폐섬유화증 환자와 가족 모임	http://cafe.daum.net/lpfnsipCop
4번 염색체 증후군 환우회	http://cafe.daum.net/groupfor4
소토스 증후군 환우회	http://cafe.daum.net/SotosSyndrome
모비우스증후군환우회	http://cafe.naver.com/mobiussyndrome
한국새생명복지재단	http://www.koreassm.org
폐고혈압을 이기는 사람들	http://www.phakorea.org
한국 기면병 환우모임	http://cafe.naver.com/knpa
한국 프라더윌리증후군 환우회	http://www.pwsakorea.org/
한국 골형성부전증 모임	http://cafe.daum.net/thsthdud
러셀실버증후군환우가족모임	http://cafe.daum.net/russelsilver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우회	http://cafe.daum.net/Klinefelters

단체명	홈페이지주소
해바라기 피는언덕(말관증후군 환우회)	<a href="http://cafe.daum.net/Happyhill">http://cafe.daum.net/Happyhill</a>
Daum 카페 난치성 환우들 희망집	<a href="http://cafe.daum.net/fellowhouse">http://cafe.daum.net/fellowhouse</a>
Daum 카페 혈소판무력증 가족모임	<a href="http://cafe.daum.net/glanzmann/">http://cafe.daum.net/glanzmann/</a>
섬유성골이형성증	<a href="http://cafe.daum.net/ththys">http://cafe.daum.net/ththys</a>
만성육아종(CGD) 환우회	<a href="http://cafe.daum.net/cgd.cafe/">http://cafe.daum.net/cgd.cafe/</a>
한국강직척추염협회	<a href="http://www.gidarlim.com/">http://www.gidarlim.com/</a>
다발성경화증국제협회	<a href="http://www.msif.org">http://www.msif.org</a>
미국립신경섬유재단	<a href="http://www.ctf.org">http://www.ctf.org</a>
크론가족사랑회	<a href="http://crohn.or.kr/">http://crohn.or.kr/</a>
한국후종인대골화증 환우회	<a href="http://cafe.daum.net/happyazaaza">http://cafe.daum.net/happyazaaza</a>
한국작은키(연골부형성장애)모임	<a href="http://www.lpk.or.kr/">http://www.lpk.or.kr/</a>
한국엔젤만신드롬가족모임	<a href="http://cafe.daum.net/angelmansyndrome">http://cafe.daum.net/angelmansyndrome</a>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a href="http://www.kcmd.or.kr/">http://www.kcmd.or.kr/</a>
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	<a href="http://www.kmss.or.kr/">http://www.kmss.or.kr/</a>
한국근육장애인협회	<a href="http://www.kmda.or.kr/">http://www.kmda.or.kr/</a>
한국 ALS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a href="http://www.kalsa.org/">http://www.kalsa.org/</a>
한국 소녀위축증 환우회	<a href="http://cafe.naver.com/ataxia/">http://cafe.naver.com/ataxia/</a>
피노키오의꿈&달단비대증질환정보사이트	<a href="http://www.acromegaly.or.kr/">http://www.acromegaly.or.kr/</a>
한국 폐동맥 고혈압 환우회-파랑새	<a href="http://cafe.daum.net/pulmonaryhtn">http://cafe.daum.net/pulmonaryhtn</a>
트리치콜린스증후군 가족모임	<a href="http://cafe.daum.net/tcsfamily">http://cafe.daum.net/tcsfamily</a>
Daum 카페 척수수막류(지방종) 모임	<a href="http://cafe.daum.net/1004planet">http://cafe.daum.net/1004planet</a>
잔디회(한국근육디스트로피협회)	<a href="http://mda.or.kr/">http://mda.or.kr/</a>
Daum 카페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a href="http://cafe.daum.net/Ehlers">http://cafe.daum.net/Ehlers</a>
신경섬유종을 이기는 사람들	<a href="http://www.nfkorea.org/">http://www.nfkorea.org/</a>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우회	<a href="http://www.koreaeb.com/">http://www.koreaeb.com/</a>
Daum 카페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우회 카페	<a href="http://cafe.daum.net/koreaeb">http://cafe.daum.net/koreaeb</a>
한국코헴회(한국혈우병환우단체)	<a href="http://kohem.net/">http://kohem.net/</a>
호주 근육병협회(Muscular Dystrophy Australia)	<a href="http://www.mda.org.au/">http://www.mda.org.au/</a>
캐나다 근육병협회(Muscular Dystrophy Canada)	<a href="http://www.mdac.ca/">http://www.mdac.ca/</a>
일본 근육병협회(Muscular Dystrophy Japan)	<a href="http://www.jmda.or.jp/">http://www.jmda.or.jp/</a>
대만 희귀질환단체(T.F.R.D.)	<a href="http://www.tfrd.org.tw/">http://www.tfrd.org.tw/</a>
미국 근육병협회(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a href="http://www.mdausa.org/">http://www.mdausa.org/</a>
한국펭귄회(관절염(자가면역질환) 환우들의 모임)	<a href="http://www.kpenguin.org/">http://www.kpenguin.org/</a>
샤르코-마리-투스 환우협회	<a href="http://cafe.daum.net/cmtfriends/">http://cafe.daum.net/cmtfriends/</a>
사단법인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a href="http://www.luisa.or.kr/">http://www.luisa.or.kr/</a>
A.L.D 부신백질이영양증 부모모임회	<a href="http://www.ald.or.kr/">http://www.ald.or.kr/</a>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a href="http://www.crps.co.kr/">http://www.crps.co.kr/</a>
베체트환우회	<a href="http://www.behcet.co.kr/">http://www.behcet.co.kr/</a>
외배엽이형성증	<a href="http://cafe.naver.com/edfamily">http://cafe.naver.com/edfamily</a>
담우회(담도폐쇄증의 환아들을 위한 담우회)	<a href="http://www.ikasai.com/">http://www.ikasai.com/</a>
근보회(근이영양증 환우보호자 모임회)	<a href="http://www.mdakorea.org/">http://www.mdakorea.org/</a>
은비네 홈(엔젤만신드롬)	<a href="http://www.kangelman.net/">http://www.kangelman.net/</a>
다카야수 동맥염 환우회	<a href="http://cafe.daum.net/takayasu">http://cafe.daum.net/takayasu</a>
Daum 카페 희망둥이마을	<a href="http://cafe.daum.net/CATCH22">http://cafe.daum.net/CATCH22</a>

단체명	홈페이지주소
미국희귀질환단체(N.O.R.D.)	<a href="http://www.rarediseases.org/">http://www.rarediseases.org/</a>
레트증후군부모모임	<a href="http://cafe.daum.net/angelrett">http://cafe.daum.net/angelrett</a>
캐나다 희귀질환단체(CORD:Canadian Organization)	<a href="http://www.cord.ca/">http://www.cord.ca/</a>
윌슨사랑회(윌슨병환우와 가족들 및 후원자들의 협회)	<a href="http://cafe.daum.net/WilsonLove">http://cafe.daum.net/WilsonLove</a>
칼만증후군 환우회	<a href="http://cafe.daum.net/Kallmann">http://cafe.daum.net/Kallmann</a>
한국쇼그렌증후군환우회	<a href="http://www.sjogren.or.kr">http://www.sjogren.or.kr</a>
ARC증후군	<a href="http://cafe.daum.net/arcbaby">http://cafe.daum.net/arcbaby</a>
갑상선이 아픈 아이들	<a href="http://cafe.daum.net/ksailom">http://cafe.daum.net/ksailom</a>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a href="http://www.wish.or.kr">http://www.wish.or.kr</a>
미국실명퇴치재단(the Foundation Fighting Blindness)	<a href="http://www.blindness.org">http://www.blindness.org</a>
한국RP협회 (망막색소변성증 환우회)	<a href="http://www.krps.or.kr">http://www.krps.or.kr</a>
혈관기형환우모임	<a href="http://cafe.daum.net/congenital">http://cafe.daum.net/congenital</a>
한국혈우재단	<a href="http://www.kohem.org/">http://www.kohem.org/</a>
사단법인 한국터너협회	<a href="http://tssk.or.kr/">http://tssk.or.kr/</a>
Daum 카페 모야모야 가족모임	<a href="http://cafe.daum.net/moyamoya">http://cafe.daum.net/moyamoya</a>
녹내장환우회	<a href="http://cafe.naver.com/kglaucom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http://cafe.naver.com/kglaucom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a>

붙임 6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명단





## &lt;붙임 6&gt;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명단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강서지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179, 4층,5층,6층 (화곡동)	02-2657-3100
금천지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446, 5층 (독산동)	02-860-4100
영등포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38 (당산동6가298)	02-2164-1100
중랑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262 (상봉동)	02-2204-8100
강남북부지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8길 7 (신사동)	02-3218-0100
강남동부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28, 6층	02-3459-0100
강동지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477, 4층 (길동)	02-2225-9100
관악지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85, 9층 (신림동)	02-860-5100
광진지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45, 105호 (구의동)	02-2204-7100
노원지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47, 8층 (상계동)	02-950-8100
도봉지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684, 4층 (방학동, KT빌딩)	02-2289-3100
동대문지사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420, 5층 (용두동)	02-2173-1100
마포지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48, 2층 (상수동)	02-3140-0100
서대문지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413, 4층 (홍제동)	02-3140-8100
서초남부지사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32, 3층 (서초동재우빌딩)	02-530-0100
성동지사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546, 4층 (마장동, 성동구도시관리공단빌딩)	02-2286-2100
성북지사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5 (하월곡동) KT월곡지사 2층	02-2170-1100
송파지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89, 2층 (신천동)	02-2143-6100
양천지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67, 8층 (목동)	02-2640-4100
영등포북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6층 (여의도동)	02-3774-5100
용산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8층 (한강로2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02-2077-5100
은평지사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1길 16, 3층 (대조동)	02-2011-1100
중구지사	서울시 중구 명동 2길 34(충무로1가 21-17) KT 8층	02-2010-6100
강남서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5층 (역삼동)	02-2186-4100
강북지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43, 5층 (미아동)	02-2289-5100
구로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1 (고척동)	02-2610-0100
동작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4길 139, 1,3층 (대방동,(주)KT빌딩)	02-820-2100
서초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91, 12층 (방배동)	02-3677-1100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6층 (여의도동)	02-2126-8802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12-7, 8층 (인의동)	02-2171-1100
기장지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4 (기장읍)	051-901-0100
부산동래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1	051-500-9100
부산진구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98 (전포동)	051-605-211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051-801-0500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2층 (덕천동)	051-330-0100
부산사하지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2층 (하단동)	051-220-3100
부산서부지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5번길 7 (서대신동1가)	051-240-6100
부산연제지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61, 10층 (연산동)	051-850-6100
부산중부지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10층 (중앙동3가)	051-662-1100
해운대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13 (우동)	051-749-8110
부산금정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16층 (구서동)	051-580-8110
부산사상지사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5, 4층 (괘법동)	051-320-0100
부산남부지사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80, 3층 (남천동, 코오롱빌딩)	051-629-7100
울주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23, 4층 (무거동, 경민빌딩)	052-220-7100
울산남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6 (신정동)	052-226-9100
울산동부지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4층 (서부동, 미포회관)	052-209-8100
울산중부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UBC울산방송 4층 (학산동)	052-241-0110
강화출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4번길 5	032-932-4708
인천계양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68 (작전동 866-4) 영신빌딩 4,5층	032-550-6100
인천남부지사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368, 건보빌딩 (주안7동 1446번지)	032-870-4100
인천남동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1층 (구월동)	032-452-7100
인천부평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34번길 11 (청천동 409-2)	032-509-4100
인천서부지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경인빌딩 4,5,6층	032-560-9100
연수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45 (연수2동 632-2) KT 건물내 1층	032-811-4186, 821-4101,4108
인천중부지사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96, 5층 (신흥동2가, 누리타워)	032-770-7110
광주동부지사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82번길 16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14층	062-600-0104
광주북부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4 (유동)	062-609-011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062-250-0117
광주서부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062-601-0110
대구남부지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86	053-620-5300
대구달서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264 (두류동)	053-620-71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264 (두류동)	053-650-8806
달성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2597, 5층	053-288-0100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1 (신천동)	053-740-8300
대구북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199 (침산동)	053-666-0100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3 (범어동)	053-668-6100
대구중부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90 (남산동)	053-420-4100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495 (삼성동)	042-605-720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495 (삼성동) 국민건강보험공단	042-605-7100
대전서부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13 (만년동)	042-602-3500
대전유성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83 (봉명동)	042-820-8100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대전중부지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625	042-530-7000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송정길 1 (송정동)	033-650-8100
강원고성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남천마루 2길 4	033-681-3730, 3731,5300
동해지사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35 (천곡동)	033-530-9100
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2층 (남양동)	033-571-0100
속초지사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44 (조양동)	033-639-9100
양구출장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14	033-481-1297
양양출장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7, 2층	033-671-8681,8682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8,4층	033-372-0625, 0626,1971
원주형성지사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461, 5층 (우산동)	033-749-9100
인제출장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2번길 67	033-461-3302
정선출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5-11	033-563-1004
철원출장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4 (신철원리 625)	033-452-4900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4 (근화동)	033-250-9800
태백정선지사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72	033-580-6100
평창영월지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128, 2층	033-339-9100
홍천지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645 (태학리)	033-430-8600
화천출장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새싹길26 (아리249)	033-441-4790
횡성출장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북로3 (91-5)	033-344-5000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25 (의정부동 439-23)	031-828-9100
가평출장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48, 3층	031-581-4321 582-4020~1
고양덕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7 4층 (화정동,요진타워)	031-930-4100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28, 5층 (마두동)	031-909-2300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별양동1-16) 교보빌딩4층	02-6942-0100
광명지사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5 (철산동) 융창빌딩 5층	02-2620-9800
경기광주지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23 (경안동)	031-8026-0100
구리지사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34, 5층 (토평동)	031-550-9100
군포지사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3 유일빌딩 4층	031-428-7100
김포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사우동 922) 이프라자 5,7층	031-980-3800
남양주가평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0 (평내동), 2층	031-590-7201
동두천연천지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06 (생연동) 건강보험빌딩, 2층	031-894-0200
부천남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4, 7층 (삼곡본동)	032-610-2100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0 (상동) 월드타워11층	032-650-3100
성남남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19 (서현동) 금화빌딩10~12층	031-788-4110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성남북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23, 3층 (신흥동, 일문빌딩)	031-729-0100
수원서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5층 (정자동)	031-240-4100
수원동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인계동)	031-230-9100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7층 (인계동)	031-230-7700
시흥지사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66 (신천동 711) 삼영빌딩 8층	031-310-4100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원시동 안산이마트 건물 4층)	031-412-2000
안성지사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 (석정동 270-24), 3~4층	031-8056-0200
안양동안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관양동)	031-479-9700
안양만안지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동) 안양저축은행 8층	031- 478-8100
양주지사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6 (광사동) 광장프라자 4층	031-860-9100
양평지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2 (양근리)	031-770-4100
여주지사	경기도 여주시 소양로 7 (하동 363-1)	031-880-4100
연천출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KT, 2층	031-832-1980 835-1980~81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87, 2층 (궐동, 궐동프라자)	031-831-0840~47
수지출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9번길 6-6 (풍덕천동) 성하빌딩5층	031-896-9261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김량장동)	031-329-4180
의왕지사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3, 3층 (고천동)	031-687-0100
이천지사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65 (갈산동)	031-644-0100
괴주지사	경기도 괴주시 금빛로 19 (금촌동 괴주프라임타워 4층)	031-956-0100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1 (서정동822-6)	031-612-5300
포천지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투로 15 경용어울림 4층	031-540-3100
하남지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40 (덕풍동) 동우프라자 3층	031-8026-0200
화성지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병점동) 금강빌딩 3층	031-547-7800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3길 9 (중부동)	055-379-4100
의령출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34(2층)	055-572-2188, 2176,2439
함안의령지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충무길 41	055-589-0100
거제지사	경남 거제시 아주로 58 (아주동)	055-639-7100
거창지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14	055-940-1100
고성출장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92	055-672-7812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79 (전하동)	055-330-8100
남해출장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67	055-864-4381~2
밀양창녕지사	경남 밀양시 시청서1길 17 (내이동)	055-350-6100
사천지사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3길 24	055-831-0100
산청출장소	경남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46, 2층	055-973-0901
진주산청지사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 (신안동)	055-740-5100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창녕출장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215	055-532-1097~8
창원마산지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66 (석전동)	055-250-6200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055-211-0100
창원진해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41, 3층 (자은동)	055-540-1100
통영고성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3층 301호	055-650-8100
하동남해지사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9	055-880-0100
함양출장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83, 301호	055-962-3050
합천출장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894, 301호	055-933-1332
경산청도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17 (사정동)	053-245-0110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1 (공단동 262-3)번지	054-467-4100
김천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94 (남산동)	054-911-6100
봉화출장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1길 76	054-673-2553
성주출장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29-15	054-932-0268
영주봉화지사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72	054-917-8100
영천지사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45 (문외동)	054-330-0700
울릉출장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193 3층	054-791-9112
청도출장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15 KT1층	054-373-0044, 054-373-0055
칠곡지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5	054-979-0100
포항남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대도동)	054-280-4100
포항북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덕산동)	054-230-2100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426 (충효동549)	054-750-3100
고령출장소	경북 고령군 고령읍 시장길 14	054-955-5900
군위출장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22 (서부364-11) KT3층	054-383-2255
문경예천지사	경북 문경시 중앙3길 11 (점촌동)	054-550-5100
상주지사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남성동)	054-907-4600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67 (옥동 791-16) 시온빌딩 2층	054-820-2000
울진영덕지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135	054-730-2100
영양출장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547	054-682-1102
예천출장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13	054-652-1017
울진출장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38-8	054-782-1700
의성군위지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복원3길 3	054-830-0100
청송출장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망미정3길 2 (월막리 193)	054-873-9086
완도강진지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5	061-430-4600
고흥보성지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25,	061-830-3800
곡성출장소	전남 곡성군 읍 학교로 114 (읍내리 710-1)	061-362-8872
광양구례지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47-8 (철성리 436-5)	061-913-4301
구례출장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덕정길 11 (KT구례지점 2층)	061-782-9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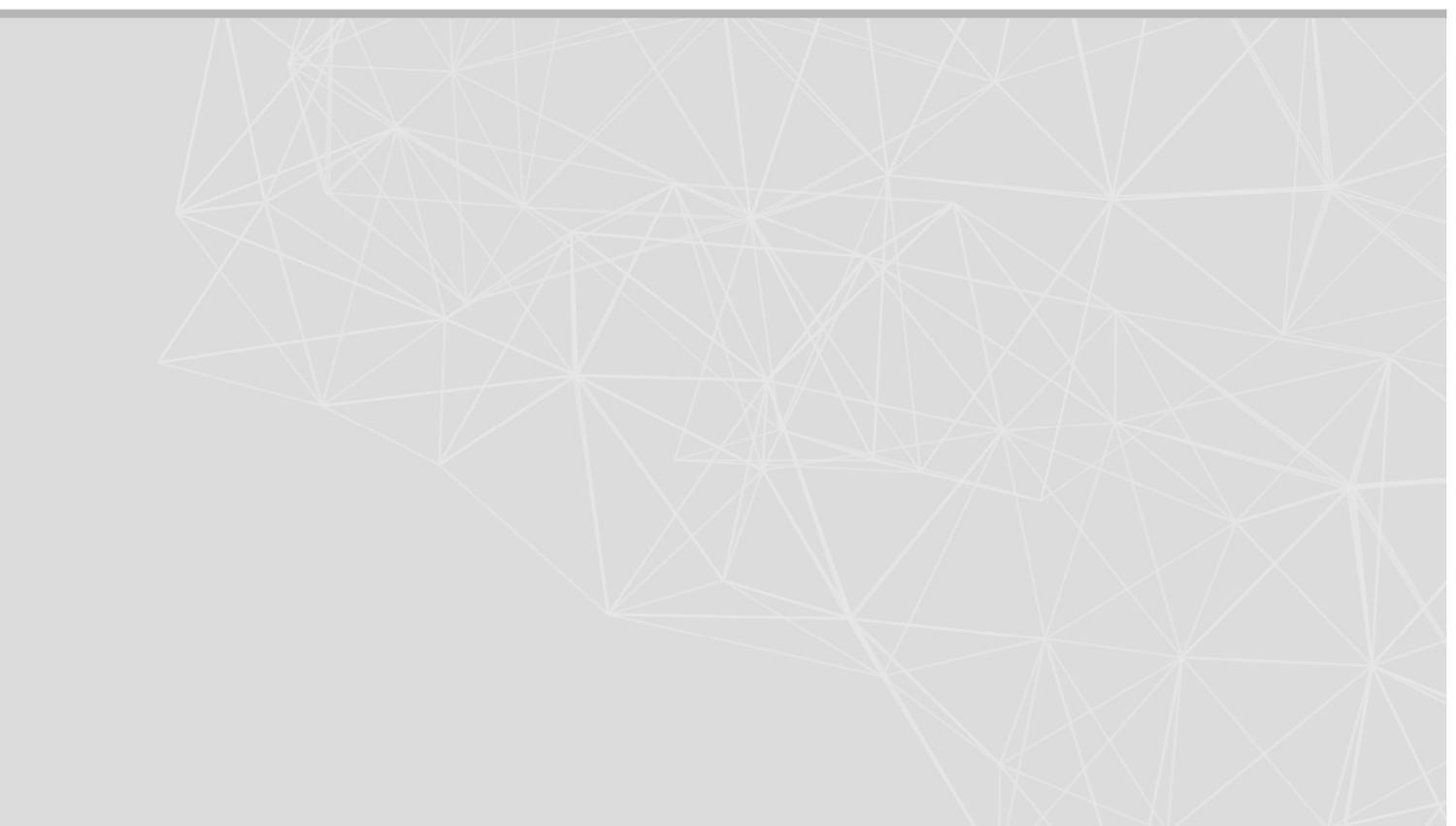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비파로 106 (상동)	061-284-6060
신안출장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 84 (상락동 2가 8-2)	061-243-2191,2192 *061-244-8015
보성출장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7,	061-853-2505~7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7 (광무동)	061-690-0601
영광합평지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43, 3층	061-350-4110
완도출장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42-2	061-554-5611~3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86	061-862-6952
진도출장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10	061-542-9002
합평출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64 (KT합평지점 1층)	061-322-0287
해남진도지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5, 2층	061-530-8100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328 (가곡동)	061-750-0311~15
나주지사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33, 3층	061-330-9800
담양출장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8-10	061-381-5382
무안신안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7 월암빌딩 (성동리 871)	061-450-0600
영암장흥지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6	061-812-0100
장성담양지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205	061-399-0100
화순지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41번지 (훈리 37-8)	061-370-9500
고창출장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4	063-563-2209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89 (조촌동)	063-450-8700
김제지사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317 (검산동)	063-540-8100
전주남부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 (서신동)	063-279-1100
전주북부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4 (경원동3가)	063-230-2111
정읍지사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5로 13 (수성동)	063-530-2500
남원지사	전북 남원시 충정로 134 (향교동 1047-3, 향교빌딩 1층)	063-630-2199
무주출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77, 무주새마을금고 2층	063-322-3610
부안고창지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문안1길 14-4	063-580-2100
순창출장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 1층	063-652-8374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고봉로 285 (영등동)	063-840-8680
임실출장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3 (이도리617 KT임실지점3층)	063-643-0903
장수출장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중동길 10, 2층	063-351-4721
진안지사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33	063-430-9100
서귀포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 (강정동)	064-735-6310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24번지	064-740-1100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044-860-8100
청양출장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20	041-942-9881
공주지사	충남 공주시 변영2로58	041-851-9100
당진지사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96 (읍내동25-23)	041-351-0100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부여청양지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78 (쌍북리 602-10)	041-830-8100
서천출장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8-1 (군사리)	041-952-0217, 953-8026,953-8027
아산지사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79 (모종동)	041-538-5100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청당동 626번지)	041-570-9100
태안출장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37-4	041-674-0052~3, 674-2106~8, 675-0874
홍성지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18	041-630-4700
괴산증평지사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63	043-820-0500
단양출장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23,	043-423-1678
보은출장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1길 17번지 (삼산리168-1번지)	043-542-6424
영동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6길 39 (매천리 307)	043-743-5529
옥천지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25 (금구리) 축협 2층	043-730-6119
음성지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19, 6층	043-870-0100
제천단양지사	충북 제천시 명륜로 80 (의림동 36-5)	043-922-0100
증평출장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48	043-836-6198
청주서부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57 (운천동)	043-269-7100
금산출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19	041-751-1505, 750-1501~5
논산지사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취암동) 문경빌딩 5층	041-730-8100
보령서천지사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36	041-930-9700
서산태안지사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9로 31 (석림동)	041-661-8590
예산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42	041-330-5100
진천지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76 (명륜회관2층)	043-531-2100
청주동부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8-12 (사직동)	043-270-9701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 6 (금릉동)	043-849-7700



붙임 7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개요

#### ■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희귀질환자 및 그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를 의미함

#### 1) 건강보험가입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붙임 1)”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 (이하 “만성신부전 요양비”라 함)

- ②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만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수시청구 가능

< 지원내역별 지원대상질환 >

지원내역	지원대상질환
보장구 구입비	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94개 질환
간병비	95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

※ 지원내용별 대상질환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이버자료실의 ‘민원서식자료’에서 다운받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 ② 환자가구에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여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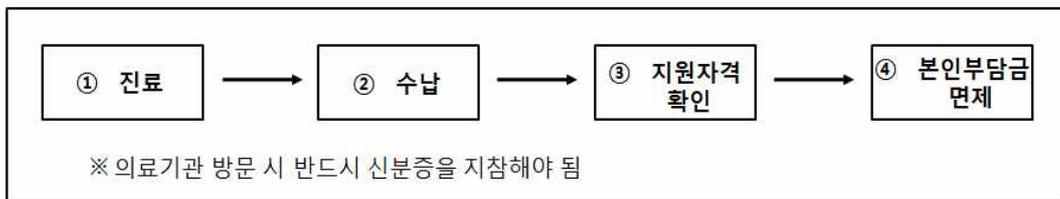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 가)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다) 특수식이 구입비 : 만18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수시청구 가능

의료비지원 이용절차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1)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2) 서면청구의 요건 및 방법

가) 서면청구 요건

- ①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②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본인부담금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④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 서면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나)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 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 ① 별지 제12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 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시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 다)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 지급

-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송금 됨
-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은 심사완료가 끝나고 지급이 가능하므로 약 3개월 이상 소요 됨

###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1) 청구방법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 붙임 3)’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장구 구입비는 확인·검토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 1) 청구방법 및 지급

-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 ▶ 지급 보증된 본인부담금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임대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 1) 인공호흡기(호흡보조기)
    - ① 별지 제16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 및 소모품 영수증 1부
  - 2) 기침유발기 대여료
    - ① 별지 제16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1) 인공호흡기(호흡보조기)
    - ① 별지 제16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호흡보조기 기계 대여 및 소모품 영수증 1부
  - 2) 기침유발기 대여료
    - ① 별지 제16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 ②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1부

- 청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검토 후 신청계좌로 입금

※ 등록 선정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으로 퇴락한 경우, 퇴락일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원칙으로 함(단, 사망으로 인해 퇴락하는 경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격변동 확인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락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되,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회수 조치)

- ※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간병비 지원

◦ 해당 관할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매월 자동 지급

※ 최초신청한 달과 퇴락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 1) 청구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서면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특수식이 구입비는 확인·검토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입금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식이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용 지급
  - 매월 청구된 구입비용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안내

###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 ■ 주소 이전 시

-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됨

※ 전입신고 기준일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고 할 것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 희귀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실 운영
-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안내
- 전문병원 안내
-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결

※문의처 : ☎ (043)719-8777,8778

■ 쉼터(민간위탁운영) 안내

- 지방 거주 희귀질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시 무료 숙박 제공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 ▶ 이용기간 :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
  - ▶ 이용절차 : 전화 및 인터넷 예약 가능
- ※문의처 : ☎ (02)323-3253, 714-5522, 8338

문의처

- 보건소 및 담당자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033)736-1882